

제 109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 은 우

지적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 저작권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문화이론 전공
허 민 호
2008년 6월

제 109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 은 우

지적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 저작권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문화이론 전공
허 민 호
2008년 6월

지적재산권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 저작권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6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문화이론 전공
허민호

허민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심사 위원장 신 광 영 ①

심 사 위 원 양 현 미 ①

심 사 위 원 주 은 우 ①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년 6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대상	1
2. 논문의 구성	4
II 본 론	7
1장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	7
1.1. 탈산업사회론	7
1.2. 물질폐기론	11
1.3. 새로운 자본주의	13
1.4. 문명 전환론	15
1.5. 비판정보사회론	17
2장 분석틀로서의 역사유물론	24
2.1. 자본, 국가, 민족	24
2.2.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33
2.3. 세계체제와 헤게모니	40
3장 지적재산권 체제와 정보의 상품화 과정	44
3.1. 정보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특성	44
3.2. 초기 지적재산권 체제	48
3.3. 개인 혹은 저자 - 정보 소유권자의 발생과 자본주의적 변형	50
3.4.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60
3.5. 정보의 자본주의적 포섭 : 경제외적 강제와 감시	69
▶ 보론 : 저자 - 창작과 소유의 괴리	75

4장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78
4.1. 저작권 분야	79
4.2. 집행조항 분야	86
Ⅲ. 결 론	92
참고자료	96
국문초록	104
Abstract	107

I 서 론

1. 연구 대상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는 우리 삶이 놓인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란한 수사적 표현들이 등장했다. 프리츠 마흐럽(Fritz Machlup)의 지식산업(Knowledge industry), 마셜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의 전자시대(electronic age)나 정보시대(age of information), 고야마 겐이치(香山健一)의 정보사회(情報社會),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지식사회(society of Knowledge), 즈비그뉴 브레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전자기술사회(technetronic society),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마크 포랏(Marc Porat)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요네지 마수다(Yoneji Masuda)의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의 메가트렌드(Megatrends) 등이 사회 정보화를 설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소개된 개념들이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초산업사회(super-industrial society),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 전자사회(e-society), 무중량 경제(weightless economy), 전자경제(e-economy) 그리고 마찰 없는 자본주의(friction-free capitalism)와 같은 용어도 등장했다.

문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는 듯한 이 현란한 수사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야기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풍경의 극적인 변화가 사회구성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주류 정보사회론¹⁾자들은 정보기

1) 주류 정보사회론은 정보기술의 혁신이 사회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논의를 말한다. 다니엘 벨이나 피터 드러커, 앨빈 토플러, 조지 길더와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정보기술은 가치중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회적 조건, 즉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되고 변용되기도 한다는 입장을 가진 논의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비판정보사회론이라고 칭하며, 대표적인 학자에는 허버트 실러나 프랑크 웹스터 그리고 더글러스 켈너와 닉 다이어-위테포드 등이 있다. 홍성태는 주류 정보사회론

술의 혁신이 사회를 심층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명 정보사회는 정보화 이전의 사회와(근본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의미 있는 단절을 이루고 있다. 이 단절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보(In-form-a-tion)는 특정한 의미가 형식이나 틀(form)속에 집어넣어진(in-) 것을 뜻한다. 표상되지 않은 관념은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는 의미를 담는 형식, 즉 매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²⁾. 오늘날 정보기술의 혁신은 디지털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추동되었다. 디지털 매체 기술은 정보의 상실 없는 복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물의 무제한적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보사회는 노동이 아닌 정보가 생산성의 원천이 되며, 자본주의가 초월되고, 육체노동으로 인한 계급 적대가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기술의 혁신이 자본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발생한 긍정적인 가능성들도 자본주의적으로 전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화란 실제로 정보자본주의화(infor-capitalization)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산업자본주의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상업화 한다고 비판한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에게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정보화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비판정보사회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주류 정보사회론은 기술결정론³⁾이나 물질과 정보를 대체관계로 파악하는 범주상의 오류에 빠져있어 현대사회를 분석하는데 적합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정보기술의 혁신이 가진 긍정적인 가능성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 사

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비판정보사회론은 “기술변화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규정한다.(홍성태, 2000a: 15)

2) 이런 의미에서 구연상은 “매체의 종류가 곧 정보의 종류”라고 말한다.(구연상, 2004: 14)

3) 기술결정론은 기술의 발전을 사회 변동의 유일한 원천으로 상정하고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가치와 신념의 영역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결코 가치 개입 없이 개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이윤이라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변동은 기술뿐만 아니라 계급·인종·성별의 사회적 관계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담론 등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회에 포섭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비판정보사회론의 입장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이 준거하고 있는 분석틀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보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보기술의 혁신(과 그것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정보 생산·유통의 구조)이 어떻게 자본에 종속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은 자본에 종속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환원된다. 이는 그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구분과 같은 도식적인 역사유물론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하지만 도식적인 역사유물론을 벗어난다고 해도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에 준거한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안정적인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의 불안요소들을 자본의 외부에 있는 권력의 강제를 통해 자본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은 경제외적 강제의 핵심 수행자인 국가에 관한 인식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준거해 정보사회를 분석하는 이들의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정보사회론의 입장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에만 성립한다. 노동, 토지, 화폐가 그것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노동, 토지, 화폐는 “판매를 위해 생산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은 “완전히 허구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⁴⁾. 상품교환의 시장이 조직될 수 있는 것은 노동, 토지, 화폐와 같은 허구적인 상품들 덕분이다.(Polanyi, 1991: 96) 상품이 아닌 것, 즉 허구적 상품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외적 강제가 필요하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의 원

4) 폴라니는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은 생활 그 자체에 수반되는, 따라서 그 성질상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이유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생활의 여타 부분과 분리될 수도, 축적될 수도, 옮길 수도 없는 인간활동의 별칭일 뿐이다. 또한 토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자연의 별칭일 뿐이다. 실질적인 화폐는 결코 생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은행이나 국가제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존재하게 되는 구매력의 상징일 뿐이다.”(Polanyi, 1991: 96)

천이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상품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노동, 토지, 화폐처럼 정보 역시 허구적 상품이다.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이 디드로(Denis Diderot)는 “민주주의 국가의 부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무제한적인 유통에 기반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마크 포스터(Mark Poster)는 정보가 “자신의 상품화에 맞서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Poster, 1994: 59-60) 정보는 판매되거나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됨으로써 그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정보는 생산의 전제였지, 생산성의 직접적인 원천이 아니었다.

‘정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정보를 상품화 하고 상품화된 정보를 생산의 원천으로 삼으며 발전한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정보가 상품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다른 허구적 상품이 그렇듯 정보 역시 경제적 강제력을 통해 상품화된다. 지적재산권법은 정보를 상품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논문은 정보사회란 정보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그것의 형성에 지적재산⁵⁾ 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나 특허 이외에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비롯해 영업비밀이나 유전자 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한 논문에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분야 중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의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론은 총 4개의 장으로 구

5)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 특허, 상표, 기업비밀 등과 같은 일련의 재산권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시바 바이다나탄(Siva Vaidhyanathan)은 UN 산하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된 이후에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으로써 어떤 위험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Vaidhyanathan, 2003: 11-2) 저작권과 같은 것은 원래 일반적 의미의 ‘재산권’과는 다른 것이었다. 정보나 지식이 재산의 한 종류로 부각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지적재산과 같은 용어가 보편화 되면서 정보의 반상품적 특성은 잊혀지게 되었다.

분된다. 본론 1장에서는 정보사회에 관한 주요 담론의 지형을 살펴본다. 정보사회에 관한 담론은 크게 주류 정보사회론과 비판정보사회론이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류 정보사회론은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비판정보사회론은 기술변화의 사회적 맥락에 강조점을 둔다. 이 입장들은 각각 낙관론과 비판론, 단절론과 연속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⁶⁾.

주류 정보사회론의 경우 탈산업사회론, 물질폐기론,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문명 전환론으로 나누어 각 입장들의 주요 논지와 한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주류 정보사회론이 기술결정론이나 범주상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에 빠져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 후 주류 정보사회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으로 비판정보사회론을 살펴볼 것이다. 비판정보사회론은 ‘정보사회’에 관한 역사 유물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주류 정보사회론이 빠져 있는 기술결정론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부문에서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것을 역사적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켰다면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보부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부문의 변화에 집중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역사 유물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이 가진 인식론적 결함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식화된 분석을 제시하게 된다.

본론의 2장에서는 정보사회 분석의 이론적 기반으로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가진 인식론적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마르크스 역

6) 사회 정보화 담론을 연속론과 단절론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관점으로는 Webster(2007)나 홍성태(1999)를 참조할 것. 프랑크 웹스터(Frank Webster)는 단절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탈산업주의(다니엘 벨과 그 추종자들), 탈근대주의(장 보드리야르, 마크 포스터, 폴 비릴리오), 유연 전문화(마이클 피오레, 찰스 세이블, 래리 허쉬혼), 정보적 발전양식(마누엘 카스텔)을 들고 있으며, 연속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신맑스주의(허버트 실러), 조절이론(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피에즈), 유연적 추적(데이비드 하비), 성찰적 근대화(앤서니 기든스), 공공영역(위르겐 하버마스, 니콜라스 간헐)을 들고 있다. 홍성태(1999)는 그의 논문에서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구분하여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고영삼(2000)은 낙관론과 비판론으로 정보사회에 관한 담론을 구분한다. 이 외에도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강상현(1994)이나 김해식(199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사유물론은 두 가지 점에서 인식론적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르크스가 현대사회를 자본의 자기논리를 통해 분석하려 했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층위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형성과 유지를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개념적인 혼동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이 지닌 가치와 한계를 드러내며 그것을 이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본론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역사적 형성을 중심으로 정보가 상품화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단, 이 논문에서 지적재산권의 광대한 분야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를 상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초기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의 독점을 막는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서 이것은 정보를 독점하고 상품화 시키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체제를 통한 자본의 정보적 확장이 18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라는 세계체제에서의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체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의 주도하에서 WTO/TRIPs나 FTA를 통해 극단적인 정보독점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정보 소유권자의 탄생부터 지적재산권 체제의 역사적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것이다.

본론 4장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세계체제 수준에서 관철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을 한미FTA 협정문을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미FTA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특수한 협정이지만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모습과 경향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과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위해 남겨진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II 본 론

1장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

이 장에서는 주류 정보사회론과 비판정보사회론이라는 대립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을 살펴볼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적 풍경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다.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기존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보사회가 기존 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보사회를 역사적 환경으로부터 탈맥락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기술의 혁신이라는 변화의 계기를 사회적 맥락(자본주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보다는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이윤 추구) 속으로 포섭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정보사회가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역사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임을 주장한다.

1.1. 탈산업사회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래 유래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듯 했다. 전쟁은 끝났고, 경제 성장은 각종 지표를 통해 증명되었다.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알게 된 국가는 ‘노동자=소비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를 이끌어 나갔다. 미국은 전후 금-달러 본위제 형태의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세계적 금융질서를 성립시켰고, 전쟁을 종식시킨 원자폭탄과 같은 무기를 소유함으로써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으며, 유엔헌장을 통해 20세기 국가 형성과 전쟁의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룰을 수립했다.(백승욱, 2007) 미국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 찾아온 사회적 안정감은 산업사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6,70년대에 발생한 사회운동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는 산업사회가 변동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

리는 신호로 여겨졌다. 닉 다이어-위테포드는 6,70년대의 위기와 저항을 ‘산업사회의 발작’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업사회는 발작을 일으켰다. 전쟁기계는 베트남 정글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으며, 뒤이은 여름에 도시 빈민가는 분노로 폭발했다. 대규모 자동차 공장은 노동자 투쟁에 의해 마비됐으며, 대학교정은 반란에 휩싸였다. 산업사회의 문화는 음악과 마약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도한 반란의 정치에 의해 전복됐으며, 가족 제도나 자연과의 관계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의해 뒤흔들렸다.(Dyer-Witheyford, 2003: 50)

산업사회 담론 내에서 이러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사회 이론은 탈산업사회론⁷⁾으로 옮겨가게 된다. 탈산업사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가장 선두에 다니엘 벨(Daniel Bell)이 있다.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탈산업사회의 도래』(1973)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로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벨은 “일반적인 노동의 유형”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며, 전산업사회에서는 농업노동이, 산업사회에서는 공장노동이 주요 노동 유형이었던데 반해 탈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노동이 주요 노동”으로 등장한다고 말한다. 벨에 따르면 “서비스 노동은 분명히 정보노동”이며, 탈산업사회는 “노동가치설이 아니라 지식가치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탈산업사회의 특징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등장한 잉여로 인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사치품의 소비가 보편적으로 가능해지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산업이 된다. 벨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잔존하는 전산업사회나 산업사회의 지배적 노동형태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탈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직업집단은 정보노동자로 구성된다”는 그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벨은 탈산업사회에서는 “재산보다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 계급”이 등장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성격도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새로 등장한

7) 탈산업사회론은 6,70년대의 민중적 저항과 경제 축적 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서구 사회의 폭넓은 논의의 한 축을 차지한 개념이다. 보리스 프랑켈은 엘빈 토플러를 비롯한 루돌프 바로, 앙드레 고르, 베리 존스 등을 언급하며 탈산업사회론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Frankel, 1997)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정보사회론의 핵심이 되는 이론가로서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적 주체는 부르주아와는 달리 ‘이윤’에만 집착하기보다 “도덕적 쟁점”들에도 우선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⁸⁾.(Bell, 2006)

벨의 이러한 논의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회자되었다. 논쟁 속에서 그의 탈산업사회론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먼저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라는 그의 단계별 발전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발전론은 마치 역사적 기반 위에서 그의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 유형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사회를 분절시키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다른 역사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사회과학에서 진화론적 사고라고 불리며, 목적론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시간적 선후관계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열악함을 도덕적 열등함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벨은 탈산업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도래한 것이 아니며, 현재에도 지역적 편차를 가지고 각 발전 단계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로 가는 사회변동의 일반도식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를 전산업사회로, 서유럽·소련·일본을 산업사회로, 미국을 탈산업사회로 규정하고 있다.(Bell, 2006: 311) 벨에 따르면 탈산업사회는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탈산업사회에 들어와 산업사회의 사회적 갈등들을 야기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순적 성격도 바뀌게 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의 모순적 성격들은 탈산업사회에 와서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산업구조의 지역적 편차를 각 지역이 상이한 시간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뒤쳐진 시간대에 있는 지역이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산업사회적 산업구조를 획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8) 그러나 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체제가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초월”할지, 아니면 그저 “자본주의에 새로운 수준의 안정과 구조”를 가져다줄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다. 벨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권력이 새로운 계급에게 종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권력이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벨은 조직된 지식이 시장 논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지식 자체가 상품화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Dyer-Witheford, 2003: 55)

다음으로 벨의 탈산업사회론이 가진 한계로 서비스산업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들 수 있다⁹⁾. 벨은 농업노동이나 공장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서비스노동으로 옮겨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증거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¹⁰⁾.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벨에 따르면 서비스노동은 재화 생산노동에 반대되는 것이다. 서비스노동의 비물리적 특성이 바로 탈산업사회를 특징짓는다. 하지만 서비스부문에서도 많은 재화 생산자가 있을 수 있고 농업노동이나 공장노동에서도 비재화 생산자가 있을 수 있다. 프랑크 웹스터는 이러한 사례로 은행과 전자공장에서 회계원이 하는 일, 교육대학의 다양한 종사자들,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등을 예로 든다. 그들은 하는 일은 거의 같지만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에도 속할 수 있다.(Webster, 2007: 108-9)

벨의 탈산업사회론이 가진 마지막 한계로 그의 논의가 기술결정론적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벨은 기술이 ‘생산성 증가의 기반’이고, ‘생산성은 경제적 생활을 변형’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기술을 사회변동의 유일한 원천으로 상정함으로써 진화론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이 사회적 가치판단과 무관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더 큰 한계를 가진다¹²⁾.

9)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산업사회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을 이 작업의 가장 권위 있는 주창자 이름을 따서 거슈니-마일스 비판(Gershuny and Miles critique)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들의 공저인 『The New Service Economy: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in industrial Societies』(1983, Pinter Publisher)를 참조하라.

10) 예를 들어 영국에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은 비교적 안정되어 “1840년부터 1980년까지 45~50%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 비중이 “1/3이하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은 1990년대의 불황과 정부정책에 따른 제조업 붕괴, 그리고 노동력의 여성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Webster, 2007: 106)

11) 벨은 기술을 “자동적 요인이 아니라 분석적 요소로서 기술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함으로써 기술결정론을 명시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다. 홍성태는 이에 대해 벨이 취하는 입장은 기술결정론 대신 “도구주의적 기술관 및 기술낙관론”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나 벨의 이러한 태도는 기술결정론과 무관할 수 없다. 벨은 “기술이 어떠한 사회적 세력관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가의 문제에서 기술을 독립시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성태, 1999: 71) 마크 포스터(Mark Poster) 역시 “벨이 기술결정론을 피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탈산업사회의 원인을 기술적 혁신에 귀속(컴퓨터+ 매스미디어=탈산업사회)”시켰다고 말하고 있다.(Poster, 1994: 54)

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벨의 탈산업사회론은 정보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

1.2. 물질폐기론

탈산업사회론이 정보사회에 관한 사회론 이라면 물질폐기론은 정보사회에 관한 기술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물질과 달리 비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열역학 제 2법칙¹³⁾을 따르지 않는다. 때문에 정보가 주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그것이 자원고갈이라는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정보와 물질을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 길더(George Gilder)는 가장 적극적으로 물질폐기론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물질의 폐기란 물질의 내부구조를 처음으로 밝힌 양자물리학의 성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학적 주장이다. 조지 길더는 양자시대의 모든 변화는 “물질의 폐기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수렴”된다고 말하며 양자물리학에 근거를 둔 기술혁명에 의해 형성된 경제를 “양자 경제”라고 부른다.(Gilder, 1991) 양자 혁명 시대의 도래는 네 개의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양자물리학이 물질의 소우주를 밝힘으로써 “물질적 고체성의 관념을 폐기” 한다. 둘째, “무게·열·힘 등의 물질적 제한을 극복하는 양자론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계¹⁴⁾를 창조”한다. 셋째, 대규모 축적을 가능

다. 벨은 탈산업사회에서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탈산업사회가 “경험주의에 대한 이론의 우위 그리고 상이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추상적 상징체계로의 지식의 부호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탈산업사회에서 생산은 “생산에 선행하는 이론적 작업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한다.(Bell, 2006) 그의 지식·정보에 대한 강조는 탈산업사회가 단순히 정보의 양적인 확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도의 증대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지식의 확대라는 측면은 여타의 사회 정보화에 대한 분석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Webster, 2007) 많은 이론가들이 정보의 양적 확대에 기반해 정보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벨의 논의는 상당히 독특한 측면이 있다.

13) 열역학 제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가 비가역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양이 최소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 소멸의 법칙인 것이다.

14) 양자론에 입각한 새로운 기계란 마이크로 칩을 말한다. 길더는 “모래 속의 규소(실리콘)로 주로 만드는 마이크로칩의 가치는 그것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능적 내용, 즉 그

케 하는 물질적 기반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거대한 관료층은 개인적인 창조자와 기업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넷째, 물질의 물질성이 사라짐에 따라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자본”이 된다.(Gilder, 1991: 6-8)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 역시 사회 정보화를 ‘아톰(atom)에서 비트(bit)로’라고 설명하며 물질폐기를 주장한다.(Negroponte, 2002) 아톰은 원자를 말하는 것으로 아날로그의 물질성을 가리키며, 비트는 이진수(binary digit)의 약자로 디지털의 비물질성을 가리킨다. 네그로폰테는 아날로그의 물질성을 디지털이라는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 소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질폐기론에 따르면 정보사회는 인간의 정신을 통해 물질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회이다. 물질폐기론은 사회 정보화를 추동한 디지털의 기술적 가치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물질폐기론은 기술의 발달을 변동의 유일한 원인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술결정론에 빠져 있다. 또한 길더가 정보사회를 “물질의 법칙보다도 정신의 법칙에 지배되는”(Gilder, 1991: 28)사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물질폐기론은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관념론적 해석이다. 이 관점은 정보가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물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이처럼 물질폐기론은 같은 범주에 놓일 수 없는 것을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범주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질폐기론자들은 “회로를 납땀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필리핀의 10대 소녀들, 한 방에 여섯 명이 뺨뺨이 들어 앉아 일하는 실리콘 밸리의 저임금 노동자들, 반복되는 격무로 근육이 마비된 기록원들과 데이터 입력 노동자들, 대학으로 알려진 비영리 관료기구의 연구자들”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Henwood, 2004: 25)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노동이 아닌 극심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칩생산은 직업병과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기기들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들이고, 전기가 없다면 이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기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석유, 석탄, 우라늄과 같은 재료들”이 엄

것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말한다.(1991: 7)

청나게 사용된다.(Henwood, 2004: 33) 물질폐기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물질적인 측면은 결코 정신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단지 정보사회의 물질적인 측면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와 단절된 새로운 사회라는 관념은 물질적 측면의 은폐를 통해 그려진 것이다.

1.3. 새로운 자본주의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정보화의 급진적 흐름이 “새로운 사회구조”를 출현시켰다고 말한다. “새로운 사회구조는 20세기의 말미에 일어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재구조화 과정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발전양식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카스텔에 따르면 산업적 발전양식에서 생산성의 주요원천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도입과 에너지를 생산과 순환과정에 분산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반면, 정보화 발전양식에서는 생산성의 원천이 “지식생산, 정보처리, 상징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있다.(Castells, 2005: 40) 그는 발전양식의 변화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심층적인 재구조화를 “정보화 자본주의(informational capitalism)”라고 부른다¹⁵⁾.

카스텔은 현대사회가 상품교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연속론적 입장에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그러할 뿐 정보화 자본주의의 내적 논리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그가 단절론적 주장에 친화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카스텔은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인용하며 정보화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보화주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¹⁶⁾. 정

15) 카스텔은 정보화가 ‘새로운 사회구조’를 출현시켰다며 단절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측면을 통해 분석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크 웹스터는 카스텔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는 견해(연속성)와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정보주의라는 견해(변동) 간의 해소되지 않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카스텔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2007: 197)

16) 그는 네트워크 내의 주체의 다양성과 네트워크들의 다양성이 단일한 형태의 ‘네트워크 문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같은 곳에서 곧바로 “네트워크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 내에서도 공통의 문화적 코드는 존재”한다고 고쳐 말한다. 카스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많은 문화들, 많은 가치들, 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동일

보화주의 정신의 주체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참여자들이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을 즐겨하며, 가상공간에서의 시·공간적 체험을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 이전과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정보화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주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서 역사적 주체로 상정된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비판이론가들은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점은 카스텔도 이미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카스텔이 정보화 자본주의에서 과거와는 다른 계층화가 성립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에 있다. 그는 네트워크 참여자인 정보노동자가 자본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며, 전통적인 노동계급이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정보노동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정보적 능력을 지닌 전문가 계급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정보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노동형태가 된다. 정보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가들을 능력으로 압도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정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계층체계는 “응당한 것이기 때문에 도전받지 않”는다.(Webster, 2007: 220) 잉여가치의 착취로 인해 계급적 대립이 나타난다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논의가 카스텔에게서는 계급 대립이 사라지는 미래로 그려지고 있다. 일반(육체)노동자들의 감소라는 그의 주장은 정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원천이 지식·정보에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노동가치론에서 지식가치론으로 생산력의 원천이 변하고 있다는 다니엘 벨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카스텔은 이에 따라 육체 노동의 감소와 서비스 노동의 증가를 얘기하며 고용구조의 변화를 정보화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그는 (다니엘 벨 처럼) 서비스 노동의 개념적 모호함을

한 속도로 변하고 해당 네트워크 단위들의 조직적, 문화적 변화를 따르면서, 여러 정신들에 전달되고 네트워크 내 다양한 참여자들의 전략을 알려준다. 실제로, 그것은 문화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문화, 각 전략적 결정의 문화, 경험과 이해의 잡동사니다. 실재를 재배치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 컴퓨터가 강조한 눈에 보이는 경험처럼, 그것은 다면적인 가상의 문화다. 그것은 ... 환상이 아니며 물리적인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즉 그것은 지나간 성공, 실패의 원료로서 컴퓨터에 기억된다. 네트워크 기업은 이러한 가상문화 내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 ... ‘정보화주의 정신’은 신호를 처리하는 광전자회로 속도만큼 가속화된 ‘창조적 파괴’의 문화다.”(Castells, 2005: 275)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카스텔의 사회학적 논의 외에도 사회 정보화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은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의 논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빌 게이츠(Bill Gates)가 『미래로 가는 길』에서 주장한 ‘마찰 없는 자본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은 완벽한 시장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가상공간에서 경쟁 활동이 일어날 경우 디지털 기술은 “완전한 경쟁”에 필수적인 “완전한 지식” 혹은 완벽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시장의 경직성과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제거된 완전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Gates, 1997)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현 시대의 가장 공격적인 독점기업가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빌 게이츠의 마찰 없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사이버 공간의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저변에 깔고 있는 사회적 환상을 완벽하게 캡슐로 싸서 보호하는 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빌 게이츠가 말하는 마찰이란 “교환과정을 유지해주는 구체적인 장애물들의 현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상성의 사회적 적대심과 권력관계와 기타 등등의 실재계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Žižek, 2002: 303)

정보사회론자들의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보기술의 혁신을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의 내적 갈등과 모순이 평화롭게 초월되고 정보기술에 의해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보사회의 자본주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가 기존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정보사회의 단절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4. 문명 전환론

정보사회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표상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문명전환론은 정보사회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설명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소위 ‘물결

론'을 통해 제2의 물결 시대를 지나 제3의 물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3의 물결은 탈산업화와 정보사회의 형성으로부터 도래한다. 그의 말을 직접 빌리자면 인류는 “미래를 향한 일대 비약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대변동,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변혁에 직면”해 있다. 그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가 계급투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오직 정보기술의 혁신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3의 물결이 도래하고 나면 노동착취나 양극화, 인간 소외와 같은 문제는 극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Toffler, 1994)

토플러의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마르크스와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깔려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물질적이며 무형적인, 잠재적으로 무한한” 정보재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소유권에 집착”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에 대한 잠재적 대결은 그에게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이 가진 함의들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다. 토플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하드웨어가 항상 소프트웨어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혁명은 우리에게 그 역이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가 지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경제를 움직여간다.”(Toffler, 1990: 505) 마르크스는 기술의 발전을 항상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도록 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에 반해 토플러는 사회 변동의 원인을 ‘컴퓨터 혁명’이라는 기술적 요인으로 상정함으로써 기술을 사회적 정세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탈맥락화시킴으로써 기술결정론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토플러는 정보재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값싸게 재생산될 수 있으며, 더 널리 분배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의 상품과 서비스는 소유권이나 상업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주장한다.(Dyer-witheford, 2003: 75)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스스로 이 사실을 부정한다. 그는 공유됨으로써 그 가치를 확장하는 정보의 속성을 지적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서 정보나 지식을 상품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빈 토플러와 조지 길더의 이론에 기초하여 1993년 결성된 ‘진보와 자유 재단(PFF: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¹⁷⁾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체에

17) 진보와 자유재단은 비당파적인 연구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8년 11월까지 미 하원 대변인이었던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의 정책개발조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한 앨빈 토플러, 조지 길더, 이스터 다이슨 등의 정보사회론자들이 모여 작성한 「가상공간과 미국의 꿈: 지식시대의 대현장」은 “20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물질의 폐기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그들은 “사물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며 정보화 이후 생산의 원천은 “인간의 지식”이라고 말하며, 정보의 사적 소유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강화, 정보화 추진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사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¹⁸⁾.(PFF, 1994)

1.5. 비판정보사회론

비판정보사회론은 지금까지 보아온 논의들과는 달리 정보사회를 사회적·역사적 맥락 아래서 파악한다. 이 입장에서 기술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달하고 이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비판정보사회론자인 허버트 실러(Herbert Schiller)는 미디어와 정보 부문이 “고용과 (국내외적인) 수입의 주요 원천인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 기대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통합된 상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화가 오늘날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강조하고 있다.(Schiller, 2004: 16) 그러나 그는 지금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초국가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 정보자원의 공급을 감독하고, 탈취하며, 착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chiller, 1995: 5) 이는 실러가 주류 정보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정보화를 자본의 이윤추구로 해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이다. 그는 이런 맥락 하에서 도서관, 미디어, 교육, 선거 심지어는 거리보행권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자본주의에 의해 사유화 되고 있다. 댄 실러(Dan Schiller)도 사회 정보화가 초기 성립과정부터 공적이해보다는 기업의 이

18) 이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빌 게이츠나 ‘자유와 진보 재단’의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논의가 널리 유포되어 있는 정보주의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을 비롯한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지식시대의 대현장’에 나와 있는 정책 제안들은 1996년의 미국정보통신법에 영향을 끼쳤다. 닉 다이어 위데포드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규제 받지 않고 집중화된 자본의 힘이 새로운 정보 환경을 관리하리라는 믿음의 법적 신앙고백”이라고 평가했다.(Dyer-Witthoford, 2003: 85)

윤을 우선시하였다고 주장하며 허버트 실러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Schiller, 2001)

웹스터는 허버트 실러가 “정보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웹스터에 따르면 실러의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실러의 접근은 정보의 “메시지 배후에 놓인 구조적 특징”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구조적 특징이란 전형적으로 “소유양식, 광고수입의 원천, 청중의 지출능력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에서 출발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정보적 영역에서의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가능한 경로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접근이 가지는 중요성은 역사, 즉 추세와 발전의 시대구분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다양한 시기와 각 시기가 보여주는 특정한 제약과 기회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실러는 이에 기반을 두어 현 시기 자본주의에서 “정보와 통신이 경제체제의 안정 및 번영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한다.(Webster, 2007: 238-9)

실러는 정보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앞서 살펴본 정보화에 관한 논의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결정론적, 목적론적 한계나 범주상의 오류를 적절히 경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분석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사회에 대한 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도식적인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러가 준거하는 역사 유물론이 ‘도식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가 아닌 직접적인 의미에서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사용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Marx, 1997)짓는다는 건축적 은유를 그야말로 도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러는 저서 곳곳에서 국가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민족국가를 자본의 법적·정치적 대리인으로 환원시키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도식적인 유물론은 ‘정보고속도로’¹⁹⁾에

19) 미국은 1990년대 초 ‘정보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하고 인터넷 민간화 이후의 지구적인 정보화 격랑을 예고하였다. 이는 1993년 발표된 ‘국가정보하부구조(NII)구상 행동계획’과 1994년 발표된 ‘지구정보하부구조(GII) 구상’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고속도로 구상’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속도로라는 은유에 대한 것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미지는 선형적 운동, 물리적 이동, 물질적 고체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자본을 대는 사람이 기본적인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일부 결정은 미리 할 것이다. 누가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어디에 건설할지, 그 도로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도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얼마나 흐르게 할지, 도서관 협회의 표현에 따르자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까지도.(Shiller, 2004: 154)

허버트 실러는 정보사회 형성과정에서 모든 핵심적인 결정이 자본에 의해 독단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의 외부에 있는 국가와 같은 사회조직의 역할을 폄하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허버트 실러의 견해는 비판정보사회론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간햄(Nicholas Garnham)도 정보사회의 매체 환경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그는 매체 환경은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경제 발전을 분석하는 핵심적 요소가 “가격과 이윤의 확대”라고 지적한다.(Garnham, 1990: 122) 그리고 그는 경제적 영역이 문화나 정치를 형성하는데도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조화하는 종속적인 기구가 아니다. 카스텔은 “국가가 기술 개발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새로운 조건하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사회의 자율적인 혁신 에너지를 가로막아 지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기술과 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방해하거나 가능케 하거나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이 전체 기술혁신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면, 국가가 해당 공간과 시간에서 지배력을 발휘하는 사회적·문화적 세력을 발현시키고 조직하기 때문이다.(Castells, 2005: 35)

문에 사이버스페이스의 다방향적 정보통신적, 가상적 상호작용을 지시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디지털 기간망의 증진이라는 목적만큼은 분명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정보화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된 이후인 90년대 초반에도 정보화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보화가 산업주의 패러다임에 준거하고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 국가는 자본과는 다른 교환양식과 조직원리를 가진 사회조직이다. 이를 자본에 종속된 기구로 전락시킨다면 분석에 필연적으로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허버트 실러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과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감시에 관한 모든 것을 자본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상당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정보사회의 하부구조를 건설하고 결정하는 주체이다. 국가는 정보자본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지 자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의 원형인 아르파넷²⁰(ARPANET)은 군사적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킨다. 2장에서 보겠지만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고 다른 공동체를 약탈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국가는 해당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약탈을 위해 토지나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국가는 약탈 기구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재분배 기구처럼 보이게 된다. 약탈과 재분배는 국가의 중심적인 교환양식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²¹. 때문에 감시는 국가 형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기든스는 감시가 근대국가 형성

20) 인터넷의 기원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 국방부 첨단기술연구계획국(ARPA)의 작업으로 시작되었고, 아르파넷(ARPANET)은 이 기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21)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카니보어(Carnivore)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국민을 감시한다. 카니보어는 수초 동안에 수백만 통의 전자 메일 내용을 자동 검색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FBI는 카니보어 외에도 감시 대상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매직 랜턴(Magic Lanter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매직 랜턴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후 키보드를 두드리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자동적으로 FBI에 보고하는 프로그램”이다. FBI는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키보드의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암호화된 전자 메일은 열어 볼 수 없는 기존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포춘>지로부터 2001년 최악의 제품”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홍성욱, 2002: 88-9) 국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전자 감시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저항에 부딪혀왔다. 사생활 침해와 정보 인권 문제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균열은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를 통해 해소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균열이 9·11이후 상상적으로 메워지게 된다. 9·11이라 폭력적 재난은 미국인들에게 고통과 애도의 공통성을 부여했다.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민족으로서의 동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통의 “폭력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柄谷行人, 2007, 167) 고통의 공통성은 미래를 위한 계획의 지평을 마련해준다.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이라고 말한다.(Renan, 2002: 81) 민족은 고통의 기억을 넘어서기 위해 희생을 준비하는 결속체인 것이다. 극단적인 감시로 인해 발생한 국

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전통국가와 비교해 볼 때, 근대국가의 경우 일탈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감시의 확대는 국가권위와 통치대상(국민)의 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오늘날 국가는 점점 사소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이나 관계까지도 간섭한다. 개인생활은 다양한 정보활동에 노출되며, 정부는 제한 없이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통신·운송수단의 급격한 발전과 세련된 정보차단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고도로 국가권력집중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도 있다. 국가행정력의 목표와 상관없이 감시능력은 국가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Giddens, 1993: 353)

국가와 자본은 서로 필연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거나 종속된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²²⁾.

가와 시민사회의 분열도, “자유와 평등의 결여”도 민족을 통해 메워지고 해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9·11 사건 이후 미국은 극단적인 전자감시 체제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카니보어는 시민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9·11사건 이후 통과된 반테러법(Patriot Act)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감시 장치가 되었다. 반테러법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이나 FBI가 카니보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트래픽(traffic)과 개인의 전자 메일을 검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실 9·11 사건의 여파는 미국만이 아니라 여타 선진국까지 퍼졌다. 영국의 경우 9·11 사건 이후 국립범죄정보국(NCIS)을 통해 “정보 통제 수단의 하나로 모든 통신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홍성욱, 2002: 88-9)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감시 체제는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07년 대선 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공직선거법과 올해 개정을 앞 둔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노골적인 전자감시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전자감시 관련 법에 관해서는 장여경의 글(2007a, 2007b)을 참조하라.

22) 예를 들어 정보사회를 자본(이라는 단일원인)으로 설명하려는 분석틀로는 1998년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가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하려다 저지당한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1998년 6월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사장은 ‘MS사에서 한글과 컴퓨터사에 2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대신에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의 개발을 전면중지하고 1년 안에 판매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다. 한글과 컴퓨터사는 당시 6개월여 동안 임금체불을 하는 등 더 이상 회사를 존속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은 경제논리상 정당한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MS 워드프로세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기 위해 한글을 단종 시켜야 했다. 1998년 6월에 이찬진 사장의 발표가 있고난 후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경제제가 아니라 문화제라는 인식이 국내에 크게 확산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글이 가지는 공공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사는 더 이상 한 개별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비판정보사회론의 입장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학자로 프랑크 웹스터를 거론할 수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이 “유동적이고 현기증을 일으키는 혁명적인 요동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웹스터는 이러한 선언들이 결코 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요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사회의 지속적인 특성일 것”이라는 씨브룩(Seabrook, J.)의 견해를 지지한다.(Webster, 2001: 190) 이러한 언급에서 웹스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성이다. 그가 자본주의의 연속성이라고 파악하는 특징은 “지불능력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 공급에서 “공공공급보다 사적공급”이 중요해진다는 점, 이익과 손해라는 “시장의 기준이 그것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규제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경쟁이 경제적 활동을 조직하는데 가장 적절한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는 점, “재산의 사유화가 국가 소유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그리고 “임노동이 노동을 조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점 등이다.(Webster, 2001: 192)

웹스터는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자본의 특징 중 하나를 “규제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를 부여하는 주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웹스터는 자본주의의 지속을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을 흉내”내어 “기업문명의 공고화”라고 말한다.(Webster, 2001: 192) 웹스터는 마치 현대사회가 자본에 의해, 그리고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언급은 자본주의에 대한 중대한 오해의 소산이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경쟁이 아니라 반(反)시장으로서의 독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

제기되었다.(홍성태 1999: 168) 이찬진 사장의 발표가 있고난 후 ‘아래아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운동본부에서는 국민주 20억 원을 모금하고 이민화가 경영하는 벤처기업인 메디슨이 50억 원을 출자하여 한글과 컴퓨터사를 지켜냈다.(전자신문, 2000년 12월 07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한글 프로젝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공유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자유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홍성태, 1999: 169) 이러한 사례는 사회 정보화(나아가 사회구성체의 변동)가 단순히 기업 자본주의라는 경제논리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글과 컴퓨터사 인수 실패 사건은 자본과 함께 민족국가라는 또 다른 층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야기한다. 브로델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란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명제로서의 독점이며, 바로 이 독점을 향한 대자본들 간의 경쟁이 자본주의의 특이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본 동력”이다. 경쟁은 오히려 기업의 이윤 창출에 적대적이다. 경쟁자들은 가격과 그에 따른 이윤폭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의 형성과 집중은 정치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고유 영역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백승욱, 2005: 18-21)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과거와는 다른 가치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의 새로운 위상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범주상의 오류나 기술결정론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그 한계를 살펴보는 지점에서 드러났듯이 정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노동가치설에서 지식가치설로의 전환’, ‘재산보다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 계급의 세력화’, ‘완전한 경쟁에 필수적인 완전한 지식의 완벽한 소통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며 지식이나 정보가 자유롭게 생산·유통되는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사적 소유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정책적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이 그린 장밋빛 미래를 자본주의적으로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대신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생산력의 요소가 되고 있는 정보가 자본주의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직시한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 역시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측면이나 정보자본주의의 형성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분석틀인 역사 유물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마르크스 역사 유물론이 가진 인식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판정보사회론의 입장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엄밀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공백을 이론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2장 분석틀로서의 역사유물론

2.1. 자본, 국가, 민족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은 고전과 정치경제학자들이 자연화 시켰던 자본주의를 역사 특수적인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비판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역사 속에 위치시키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는 『자본론』에서 공장법의 도입과정이나 자본의 시초축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 부분에서 그의 역사적 설명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사 유물론의 이론적 공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백승욱, 2007: 36-40) 『자본론』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역사적 설명은 그런 유기적인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자본의 시초축적에 관한 설명이다. 시초축적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곳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형성에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국가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본론』 전체의 구성이 자본의 자기 논리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마르크스는 민족에 대한 부분에서도 인식상의 결함을 보이고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그의 탁월한 저서 『상상의 공동체』의 서장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불편한 변칙적 현상이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족주의를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해 왔다고 지적한다²³⁾.(Anderson, 2007: 22)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앤더슨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질적인 민족과 국가의 결혼” 이전에 역

23) 앤더슨은 그의 책 서문에서 “민족주의의 변칙성에 대해 더 만족할 만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잠정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상상의 공동체』를 저술했다고 말한다.

시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대상의 결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자본의 결혼”이다.(柄谷行人, 2006b: 44) 이에 따라 가라타니는 현대사회를 ‘자본=민족=국가’의 삼위일체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그는 역사유물론의 인식론적 결합을 보완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에 준거하고 있지만 마르크스를 도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역사유물론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자본과 네이션과 국가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참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만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국가나 네이션에 관한 인식상의 결합이 있습니다.(柄谷行人, 2007: 31)

가라타니는 지금까지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해석되었던 마르크스를 교환양식을 중심으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자본, 민족(네이션) 그리고 국가(스테이트)는 교환양식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가라타니가 마르크스가 고안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유물론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양식에 초점을 두고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그 가능성의 중심”에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교환양식 대신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경유하며 경제학 연구에 전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마르크스를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한 작업을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柄谷行人, 2007: 43)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체의 형성과 발전을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한다. 가라타니는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이 가져오는 오해 때문에 역사유물론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인식론적 결합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는 생산양식이라는 표현이 교환이나 분배가 생산 이후에 오는 이차적인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환양식’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원래 생산양식이란 생산이 일정한 교환이나 분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르크스가 경제적인 하부구조를 중시한 것은 인간을 먼저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는 관점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인간이 자연에 작용을 부여하여

제화를 만들어내는 생산을 증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는 생산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꿔 말하면 일정한 생산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생산양식이라는 관념입니다.(柄谷行人, 2007: 33)

그는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교환양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유물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따라서 가라타니가 생산이 아닌 교환²⁴⁾이라는 관점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재구성하려 하는 것은 마르크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양식을 분석하면서 마르크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국가와 민족)을 살펴보기 위한 그의 방법이다²⁵⁾.

마르크스는 상품교환이 “공동체의 경계선에서 시작”되며, “물건들이 한 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으로 된다”고 말한다.(Marx, 2005a: 113) 다시 말해 상품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상품교환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이나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접촉에서 생기는 폭력적인 강탈”과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柄谷行人, 2006b) 가라타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을 호수(互酬, reciprocation),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상품교환보다 먼저 일어나는 교환을 약탈이라고 이야기 한다. 호수와 약탈은 상품교환과는 다른 교환원리이다.

24) 가라타니는 교환을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쓰고 있는 교통(Verkehr, 박재희의 한국어 역본에는 ‘교류’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영역자는 intercourse로 옮기고 있다)이라는 개념은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교역, 더구나 전쟁”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교통을 교환의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독일 이데올로기』를 쓸 때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이라는 단어를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후에 생산양식이라고 부른 것을 이 시기에는 교통형태라고 불렀다.(柄谷行人, 2007: 37) 독일이데올로기의 영역자 역시 영역본의 한 주석에서 intercourse가 “개인들, 사회 집단들 및 모든 나라들 간의 물질적·정신적 교류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 저서에서 “교류형태, 교류양식, 교류관계, 생산 및 교류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는 후에 생산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변하게 된다.

25)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 교통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자본론』에서 교통의 한 형태 즉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생겨난 교역(상품교환)이 확대됨으로써 성립한 자본제 경제 연구에 전념했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 가라타니는 이것이 마르크스가 “국가나 공동체, 네이션이라는 영역에 대한 고찰을 이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교통,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柄谷行人, 2007: 39)

상품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약탈이 중단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 이 세 가지 교환원리 가운데 상품교환이 확대되었고 그것이 다른 교환을 압도했다. 그러나 상품교환은 결코 전면화 될 수는 없다. 가라타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그것[상품교환]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법 관계였고, 이미 계약 이행을 폭력적으로 보증하는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공동체를 완전하게 해체할 수는 없다. 예컨대 상품교환은 가족을 시장경제화할 수 없고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 같은 것도 완전히 자본주의화할 수는 없다. 자본제 경제는 인간과 자연의 생산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비자본제 생산을 전제하고 있다.(柄谷行人, 2006b: 346)

다시 말해 자본과 국가와 민족은 각기 다른 교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과 국가와 민족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 세 가지 층위가 삼위일체(자본=국가=민족)로 결합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체 내의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여 다른 공동체를 폭력적으로 약탈하면서 성립된 것이다. 국가가 물리적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던 막스 베버(Max Weber)나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되어 왔으며²⁶⁾, 70년대 이후 국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네오마르크스주의자²⁷⁾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

26)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의 특징을 특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데에서 찾았고, (Weber, 2002)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의 특징을 물리적 폭력의 독점과 함께 조세권의 독점에서 찾았다. (Elias, 2003) 그리고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는 전쟁, 경제 활동의 증진(자본주의의 확장) 그리고 자신의 정당화를 위한 동원을 효과적으로 성취한 데서 현대국가의 독특한 조직과 형태가 출현했음을 주장한다. (Held, 2001) 헬드의 이러한 주장 역시 국가가 자본, 민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국가는 평상시 정부의 형태로 등장하지만 전쟁 시 국가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가라타니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7)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에 대한 논쟁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중립적인 사회 계획자로서의 국가’를 상징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연원한다. 밀리반드와 폴란차스 사이의 논쟁은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론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라

다. 폴란차스(Nicos Poulantzas)는 군대·경찰·교도소와 같은 조직화된 물리적 억압의 특정제도들을 포괄하는 국가의 폭력이 국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국가가 경제적 지배계급에 의해 조정되는 단순한 폭력기구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Poulantzas, 1986) 경제주의로 귀결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물리적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의 외부에 있는 독립적 층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는 ‘상품교환 보다 먼저 상대를 폭력적으로 약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폭력적 수탈만으로는 국가가 형성·유지될 수 없다. 일회적 약탈이 아닌 지속적인 약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강탈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한다거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원형이다. 국가는 더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수탈하기 위해 재분배함으로써 토지나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관개 등 공공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수탈 기관으로 보이지 않고 [...]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표상된다.(柄谷行人, 2006a: 56)

가라타니는 약탈이 “지속적일 경우 그곳에 공납제국가”가 성립한다고 말한다.(柄谷行人, 2007: 34) 국가는 이처럼 약탈-재분배의 교환양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분배는 치수관계 등의 공공사업이나 복지, 안전의 확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는 어디까지나 약탈을 위한 조치로서 나타나며, 결코 지배계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지배계급의 요구들은 지배계급의 확실한 경제·정치적 이익과 부합되고 국가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주은우, 1989: 90) 그럼에도 국가의 이러한 재분배적 속성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여 국가가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즉 공공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국가의 억압적 기능은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국가의

클라우의 개입을 통해 논쟁이 확대되기도 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박상섭(1987)이나 주은우(1989)의 글을 참조하라.

물리적 폭력의 독점으로 인한 억압적 기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 기능 역시 억압적 기능에 의해 보장된다. 알튀세르와 폴란차스는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억압적 국가기구(RSA: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ISAs: the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로 나누어 두 가지 국가 기능의 상보적이면서 구별되는 특성을 파악하려 했다. 이들은 국가기구를 표기할 때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두 국가기구의 구별적 특성 때문이다. 폴란차스의 말을 들어보자.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이라고 복수단어를 쓰면서, 국가의 억압기구는 단수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의미에서 국가와 같은 개념인 억압기구는 그 기구내의 다양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직접 지배하는 지극히 엄격한 내부적 통일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교리의 주입과 확산이라는 기능이 우선하는 까닭에 더욱 크고 중요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구들 자체 내의 상호관계 및 그들이 억압적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는 억압적 국가기구 내의 각 부분들 간의 상호관계에 비해볼 때 훨씬 더 큰 독립성을 갖는다.(Poulantzas, 1985: 81)

억압적 국가기구는 단일화 되어 있고 전적으로 공적영역에 속해 있으며 폭력에 의해 기능한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은 다원적이며 대부분 사적영역²⁸⁾에 속해 있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주은우, 1989: 42) 이들은 이처럼 두 국가기구의 구별을 통해 국가 기능을 엄밀히 분석하고 그것들의 상보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가 근본적으로는 억압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폴란차스는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존속과 기능을 보장해주는 조건은 국가의 어떤 형태 하에서는 곧 국가의 억압기구 그 자체”라고 말하며,

28)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대부분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국가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는 통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튀세르는 “그람시를 따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은 부르조아 법률에 내재한 것이고, 지배계급의 국가는 오히려 이 구분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기능으로서 사적제도도 ISA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제도들도 국가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주은우, 1989: 42)

“설사 그것들의 기능이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억압기구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뒤에 버티고”있다고 강조한다.(Poulantzas, 1985: 81) 알튀세르 역시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억압 기구인 한 힘에 의해 최종심에서 착취관계인 생산관계들의 재생산의 정치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억압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작용을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보장한다”고 말한다.(Althusser, 2000: 95) 이처럼 국가는 물리적 폭력의 독점과 행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억압적 기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공동체 내부의 교환은 호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부모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나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남겨줌으로써 미래의 보살핌을 보장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호수는 증여와 답례라는 형식을 띤 교환의 일부이다. 민족은 이러한 호수적 교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번, 부족, 친족, 중국의 방과 같은 결사, 가톨릭·유대교·이슬람교 등에서 보이는 종교 공동체”와 같은 것이 남아 있을 때 민족은 형성될 수 없다. “근대의 주권 국가와 자본주의는 각지에서 종래의 세계제국을 해체함과 동시에 그 밑에서 존재했던 다수의 공동체를 해체”했고, 민족은 그와 더불어 형성된 것이다.(柄谷行人, 2007: 166) 그리고 민족은 화폐경제가 침투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한 공동체의 상호부조나 호수의 원리를 그 안에서 ‘상상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호수적 교환은 일종의 죄의식(도덕)과 같은 내부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는 이러한 규범이 없다.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기전에 약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교환은 오히려 폭력적 약탈이 단념되었을 때 생긴다. “공동체 사이의 생산물 교환은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지배하며 그 이외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 바꿔 말해 국가와 법이 성립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柄谷行人, 2007: 61) 상품교환은 기본적으로 화폐와 상품의 교환이다. 문제는 화폐를 가진자가 상품을 가진자와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교환이 아닌 것이 오히려 합의에 기초한 교환인 것처럼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柄谷行人, 2007: 35) 마르크스는 가치형태론을

통해 상품교환의 이러한 비대칭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대칭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Marx, 2005a: 119)

마르크스가 뛰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화폐의 독자적인 위상을 가치형태론을 통해 파악해 냈다는 점과, 그 독자적인 위상이 화폐에 대한 전도된 형태의 인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 있다. 화폐에 대한 전도된 형태의 인식을 마르크스는 “화폐물신(Money Fetish)”이라고 부른다.(Marx, 2005a: 119) 바로 이 화폐물신을 통해 화폐의 자기증식으로서 자본의 운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화폐의 자기증식이 바로 자본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생산과정 보다는)유통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고전경제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를 생산과정에서 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크스가 고전과 달라지는 지점은 ‘새롭게 유통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있다.

가라타니는 마르크스가 산업자본을 상업자본의 변형으로 보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인자본과 산업자본의 차이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상품에 있다. 노동력 상품이 가치를 증진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생산과정을 중요시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가치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력 상품을 통해 잉여가치가 생산된다는 점, 즉 자본이 노동력 상품의 착취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자신을 증식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가라타니는 이 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가라타니가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고전과 정치경제학자인 리카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투하된 노동 시간이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치 체계가 사회적 노동 시간을 규정한다고 생각했다”.(柄谷行人, 2006b: 412) 이 말은 생산과정과는 별개로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유통과정에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통과정을 통해 상품이 팔리고 난

후에야 잉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상품이 만들어진다 해도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잉여가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라타니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의 잉여가치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사고, 그 생산물을 ‘노동자=소비자’가 산다는 유통과정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자본의 위기, 즉 노동의 저항 지점을 본다²⁹⁾.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비약이 있다. 그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통과정에서 노동자가 소비자로 나타날 때 자본에 대해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말한다. 가라타니는 자본이 “일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은 있지만, 구입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말한다.(柄谷行人, 2007: 161-2) 그는 현대의 소비가 얼마만큼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되고 제한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³⁰⁾. 가라타니는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교환양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마르크스가

29) 가라타니는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저항지점을 언급한다. 그것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파는 지점, 즉 노동력 상품을 파는 곳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의 운동 M-C-M'에서 자본이 만나는 두 개의 위기적 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력 상품을 사는 것과 노동자(소비자)에게 생산물을 사게 하는 일이다. 만약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패한다면 자본은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자본일 수 없다. 노동자는 이 두 위치에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다. 하나는 네그리(Antonio Negri)가 말한 것처럼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력을 팔지 말라’(자본제 아래에서 임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 또 하나는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자본제 생산물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자국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노동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柄谷行人, 2006b: 59-60)

30)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도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는 소비가 “향유의 기능이 아니라 생산의 기능이며, 따라서 물질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기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집단적인 기능”이라고 말한다.(Baudrillard, 2000: 101)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의 소비가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가라타니와 달리 대중매체가 ‘구입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사회의 소비가 얼마나 조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 매체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유희론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허구적이고 과장된 것으로 제시한다. 보드리야르의 극단적인 매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수잔 손탁(Susan Sontag)을 참고할 수 있다. 손탁은 현실은 위신을 잃어버리고, 재현만이 남게 된다는 이른바 ‘스펙터클의 사회’에 관한 담론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비판한다. 손탁은 스펙터클의 사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로 기 드보르와 보드리야르를 언급하며 이런 견해가 “프랑스의 특제품”이라고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현실이 일종의 스펙터클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깜짝 놀랄

보지 못한 국가와 민족의 존재방식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는 자본과 국가 그리고 민족의 조직 원리에 대해서 다루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자본=국가=민족)가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2.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형성과 유지를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의 포섭론은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라는 글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의 6장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마르크스의 서술계획 변경으로 인해 『자본론』에 수용되지 않은 원고이다. 그러나 역사유물론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섭론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³¹⁾. 흔히 마르크스의 포섭론은 『자본론』의 서술과정에서 가치론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조정환, 2005: 28) 이에 따라 포섭의 두 가지 형태인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은 각각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방식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과정에서 포섭론은 매

만큼 지역성”을 띠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이 세계의 부유한 곳, 그것도 뉴스가 오락으로 뒤바뀌어 버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극소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보편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ontag, 2004: 155-166)

31) 이 글이 『자본론』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포섭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본론』에 포섭이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등장하는 가치론은 포섭론의 변용이다. 조정환은 마르크스의 포섭론의 복원을 주장하며, 『자본론』에서 포섭론의 소거가 낳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본론』에서 포섭론의 이러한 소거, 혹은 가치론에의 용해는 마르크스의 플랜 전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낳은 결과는 커다란 것이었다. 『자본론』 전체 플랜의 미완성으로 인해 포섭론이 가치론으로 ‘대체’된 것으로, 즉 포섭론이 포기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식론적 편향을 생산한다. 요컨대 『자본론』 3권에서 제시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단순히 총자본 속에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의 결과로, 즉 자본의 자기운동의 결과로 이해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같은 객관주의적 시각 속에서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파국론이 도출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할 때를 기다리자는 점진적 대기주의를 낳는 한편, 바로 그것의 거울 이미지로서, 파국을 앞당기기 위한 전위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주의주의적 대리론을 낳았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 양자 간의 악순환적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다.”(조정환, 2005: 28) 조정환의 이러한 언급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섭론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뉴팩처 시대부터 산업혁명 이후까지 나타나는 노동방식의 전환을 설명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왔다³²⁾. 포섭론을 가치론 속에서만 파악하는 방식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이 가진 함의를 탈각시키는 것이다. 포섭론은 이러한 협소한 방식이 아닌 원래의 의미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포섭론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 포섭론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의 불안과 혼란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는 자본의 외부에 있던 불안 요소들을 자본의 내부로 포섭하면서 형성·유지된다. 그리고 그 불안 요소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행되는 사회간 질서의 충돌이나, 계급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들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지만, 상당 부분 국가권력을 통해 자본의 내부로 포섭되어 들어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포섭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포섭론을 살펴보는 작업은 그것이 가진 혼란을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지시자”로 들어서고, “노동과정이 자본에 포섭”되는 과정, 즉 자본가가 “타인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되는 과정을 “노동의 자본에의 형식적 포섭(formal subsumption)”이라 부른다.(Marx, 1989: 88) 형식적 포섭은 “과거의 다양한 생산과정과 다른 생산제 조건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던 기존의 노동과정”을 자본의 가치화과정으로 포섭하는 것이다.(Marx, 1989: 89) 형식적 포섭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며, 자본의 자기 증식이라는 ‘자기목적으로서의 생산’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 형식적 포섭을 통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구성체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 이행된다. 이때 “새로운 생산양식의 도입은 기존 생산양식에 대한 폭력적 단절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경제외적 강제”가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며, “부르주아 계급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생산양식의 주체들(자본가와 노동자)과 객체적 조건들(생산수단)을 계급적으로 구조화하기 시작”한다.(고태경,

32)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의 포섭론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마르크스 연구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대표적으로 이진경은 형식적 포섭과 절대적 잉여가치를, 실질적 포섭과 상대적 잉여가치를 동일시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진경의 포섭론에 대한 해석은 『자본을 넘어선 자본』(2004, 그린비)의 5장을 참조하라.

2007: 42)

그러나 마르크스는 형식적 포섭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형식적 포섭은 다만 자본의 실질적 생산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포섭의 형태를 ‘형식적 포섭’이라고 부른 것은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기존의 사회구성체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구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Marx, 1989: 9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과거의 생산양식과 단절하고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생산 조건 속으로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 포섭과 구분되는 자본주의의 질적 도약의 단계인 ‘실질적 포섭(real subsumption)’의 단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의 자본에의 형식적 포섭과 더불어 이미 ‘생산을 위한 생산’ - 자기목적으로서의 생산 - 이 더불어 나타난다. 그렇지만 자본관계에 내재적인 이러한 경향은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과 노동의 자본에의 실질적 포섭이 발전되자마자 비로소 적절한 방식으로 실현된다.(Marx, 1989: 105)

마르크스는 실질적 포섭은 형식적 포섭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노동이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면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되고, 대규모 노동과 더불어 과학 및 기계류의 직접적 생산에의 응용이 확대”되며, 하나의 “자립적인 생산양식으로 형성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물적 생산의 변화된 형태를 창조”한다.(Marx, 1989: 103) 즉, 노동의 자본에의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 이르러서 ‘고유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견되며, ‘경제외적 강제가 사회의 표면으로부터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과거의 사회구성체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을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는 형식적 포섭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서 고유한 생산양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핵심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의 형성(형식적 포섭)을 넘어서 그것들이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재생

산되는 과정(실질적 포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가 마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 분리되어 있으며,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단계론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말을 들어보자.

어쨌든 두 형태의 잉여가치 - 상대적, 절대적 - 에는 그들 각자가 구별된 존재로 관찰되면, - 절대적 잉여가치는 언제나 상대적 잉여가치에 선행 한다 - 두 가지 분리된 형태의 노동의 자본에의 포섭, 또는 두 가지 분리된 형태의 자본주의적 생산이 조용하는데, 비록 보다 발전된 두 번째 형태는 다시 새로운 생산부문에서 첫 번째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지만, 첫 번째 형태는 항상 두 번째 형태의 선행자가 된다.(Marx, 1989: 93)

이러한 언급은 그가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을 각각 독립적인 순차적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르크스는 이 두 가지 포섭형태가 불균등한 병존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두 단계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실질적 포섭은 형식적 포섭을 포함하지만, 형식적 포섭은 결코 필연적으로 실질적 포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³³⁾.(Marx, 1989: 88)

마르크스 포섭론의 단계론적인 혐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자본론』의 시초축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포섭론이 가치론 속에서 파악될 때는 역사적으로 매뉴팩처의 시대부터 산업혁명 이후 까지 거론되어 왔지만, 포섭론을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한 것으로 확장한다면 시초축적은 포섭론에 대한 역사적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정환도 형식적 포섭의 과정이 “얼마나 유혈적인 과정이었는가는 시초축적을 다룬 장에서

33) 이러한 서술은 이후에도 두 포섭형태를 분절된 시간적 선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지적은 마르크스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가지 포섭형태가 단계론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형식적인 포섭은 실질적 포섭에 앞선다. 다시 말해서 자본은 먼저 자신이 설립한 생산과정(장인 등등)을 그대로 포섭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생산과정과 생산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생산력을 구현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한다.(Žižek, 2003: 99)

서술”되고 있다고 말한다.(조정환, 2005: 31) 마르크스는 시초축적 장에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 되었는지 서술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국가의 ‘피의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흥부르주아지는 임금을 규제하기 위해, 노동일을 연장하기 위해, 그리고 또 노동자 자신을 자본에 정상적인 정도로 종속시켜 두기 위해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을 이용한다. 이것이 이른바 시초축적의 하나의 본질적 측면이다(Marx, 2005b: 1013)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초축적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많은 인간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존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한다.(Marx, 2005b: 983) 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자본가의 착취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형식적 포섭의 과정이다. 그는 “국가 권력(즉 사회의 집중되고 조직된 힘)”이 이용되어 “봉건적 생산양식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과정”이 진행되며, 그것은 “잔인한 폭력에 입각”해 있었다고 말한다.(Marx, 2005b: 1033) 마르크스에 따르면 “폭력 자체는 하나의 경제적 잠재력”이며, “폭력은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 산파(midwife)”가 된다.(Marx, 2005b: 1033)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의 폭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시기’에만 필요할 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조직은, 일단 완전히 발전하면, 일체의 저항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전통·관습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를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노동자 계급이 발전”한다고 말한다.(Marx, 2005b: 1013) 직접적인 경제외적 강제는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경제외적 폭력도 물론 여전히 사용되지만 그것은 예외적이다. 보통의 사정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의 자연법칙에 내맡겨 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Marx, 2005b: 1013) 다시 말해 형식적 포섭은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외적 강제에 기반해 기존 사회구성체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실질적 포섭은 경제외적 강제가 표면에서 물러나고, 자본

이 자기 논리를 통해 재생산되는 단계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 와서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이 등장하며,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의 요구를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마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 분절되어 있으며, 형식적 포섭이 있고난 후에 실질적 포섭을 통해 자본이 자기논리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형식적 포섭을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과 병존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Marx, 1989: 88) 그는 형식적 포섭이 기존의 생산양식과 질적 단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고유한 생산양식(실질적 포섭)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에 형식적으로만 포섭된 노동이 낡은 전래적 노동방식과 구별되는 것은 그 노동과정이 수행되는 규모”일 뿐이다.(Marx, 1989: 90)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력 상품과 생산수단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이는 형식적 포섭의 과정에서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포섭은 이미 기존 사회구성체와 질적 단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시초축적에 대한 설명에서 이것이 마치 역사적 특정 시기를 거치며 완성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는 단 한 번의 형식적 포섭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허구적 상품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외적 강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형식적 포섭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형식적 포섭은 “구조이행을 위한 계급투쟁의 과정이지, 결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구성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태경, 2006: 45)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의 항구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식적 포섭의 과정에는 계급투쟁의 불안과 혼란이 존재할 뿐 그것들을 안정화 시킬 이데올로기적 심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관계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 포섭은 형식적 포섭에서 나타나는 “계급적 혼란기가 일정하게 정리되면서” 나타나게 된다.(고태경, 2006: 45)

요컨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형성은 지속적인 형식적 포섭이라는 매개를 필요로 하며 형식적 포섭 과정에서 이미 이전 사회구성체와의 질적 단절이 나타난다.

그리고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은 각각 분리된 단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형성되는 과정부터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형식적 포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포섭을 완료할 수 없다. 즉, 자본주의는 완벽한 자기 논리로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없으며 그것은 끊임 없는 포섭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스스로 유지될 수 없으며, 민족국가라는 경제외적 존재와 결합된 형태(자본=국가=민족의 삼위일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역사유물론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 보완을 시도했다. 하나는 현대사회가 자본이라는 독립적인 층위만으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 즉 현대사회는 자본, 국가, 민족이라는 각 층위의 역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적절히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는 안정적인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 없는 포섭을 통해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식적 포섭은 “자본이 자신의 영역 외부에서 발생한 노동 실행들을 자기 자신의 생산관계 아래로 합병하는 과정”이다.(Hardt & Negri, 2007: 341) 자본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영역을 자본화 시키는 작업은 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질적 단절을 수반³⁴⁾하는데, 이 단절은 경제외적 강제(혹은 폭력)를 통해 촉발된다. 이 과정에서 계급투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실질적 포섭은 이러한 갈등을 사회적 심층으로 억압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34)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 역시 자본의 내부로 포섭되며 고유한 특성에 대한 질적 단절을 겪게 된다. 정보는 자본 내부로 포섭되며 ‘공유되는 자원’에서 ‘사유되는 상품’으로 질적으로 도약하게 된다. 문화적 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창작 작업을 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통해 문화적 자원이 상품화 되자 그러한 자유는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되었다. 2003년에 맺어진 드림웍스(Dreamworks)와 마이크 마이어스(Mike Myers) 사이의 계약이 좋은 예이다. 이 계약을 통해 마이어스는 드림웍스의 영화 히트작과 고전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이 작업을 ‘필름 샘플링(film sampling)’이라고 부른다. 필름 샘플링은 기존의 영화에 새로운 줄거리를 추가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마이어스를 비롯한 여러 배우들의 연기를 그 새로운 줄거리의 영화 속에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창조작업이 오직 마이어스에게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Lessig, 2005: 173)

은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재생산한다.

정보사회 또한 역사유물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엄두에 두고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분석은 정보기술(과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을 자본화 시키는 경제외적 강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기능은 무엇인지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 자체를 넘어 민족국가라는 층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금부터는 지적재산권의 형성 및 강화 과정을 통해 정보사회의 특성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분석의 이론적 자원으로써 세계체제분석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2.3. 세계체제와 헤게모니

세계체제분석은 지적재산권 체제를 분석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분석단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헤게모니 순환의 문제이다. 세계체제분석의 분석단위는 개별민족국가가 아닌 ‘세계체제(world-systems)’이다. 세계체제분석가들은 연구대상을 민족국가 대신 ‘역사적 체제(historical system)’로 대체하였으며, 이 역사적 체제에는 현재까지의 역사 속에서 오로지 세 가지 종류만이 존재한다. 그 세 가지 체제가 소체제(minisystems), 세계경제(world-economics) 그리고 세계제국(world-empires)이다. 분석단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세계체제분석가들이 “세계의 체제들, 경제들, 제국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인(그러나 지구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 체제들, 경제들, 제국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Wallerstein, 2005: 49) 이를테면 그들은 “이 세계체제의 내부에서 다수의 정치적·문화적 단위들을 가로지르는 시공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시공간적 영역은 특정한 체제의 작동에 순응해야 하는 행위와 제도들이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Wallerstein, 2005: 49) 바로 이 지점이 이 논문에서 세계체제분석의 분석단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대의 지적재산권 체제 역시 개별국가 단위가 아니라 세계체제 수준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체제의 작동에 순응해야 하는 행위와 제도들

이 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단위를 공식화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자본, 국가, 민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세계체제분석의 대가인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세계체제분석의 분석단위가 칼 폴라니의 세가지 형태의 경제조직 구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역사적 체제의 유형범주들 - 소체제, 세계제국, 세계경제 - 은 폴라니가 말한 세 가지 형태의 경제조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소체제는 호혜성이, 세계제국은 재분배가, 세계경제는 시장교환이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Wallerstein, 2005: 50) 마찬가지로 가라타니 역시 폴라니의 경제조직 구분을 따르고 있다. 그는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는 인간경제 일반의 중요한 통합 형태로 호수나 상품 교환 외에 재분배를 들었”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역시 이러한 구별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柄谷行人, 2007: 62) 나아가 가라타니는 국가나 자본이 결코 일국단위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세계체제의 분석단위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월러스틴과 폴라니 그리고 가라타니의 분석단위 구분의 개념적 연관성을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월러스틴, 폴라니, 가라타니의 분석단위 구분의 개념적 연관성

폴라니의 경제조직	가라타니의 교환양식	월러스틴의 역사적 체제
호혜적 경제	호수(민족)	소체제
시장 경제	상품교환(자본)	세계경제
재분배적 경제	약탈-재분배(국가)	세계제국

월러스틴과 가라타니의 개념들이 폴라니의 경제조직 구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라타니는 폴라니의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자신의 교환양식 구분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폴라니의 재분배적 경제가 가라타니에게는 ‘약탈-재분배’라는 형태로 변환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라타니는 “폴라니의 결점은 재분배가 약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약탈-재분배라는 교환양식에 존재한다

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柄谷行人, 2007: 62)

분석단위의 문제와 함께 세계체제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헤게모니 순환에 관한 논의에서 나온다. 월러스틴은 국가가 국제영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세계경제를 세계제국으로 전화시키는 방법과 헤게모니를 세계체제에서 달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세계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16세기의 찰스 5세, 19세기 초의 나폴레옹, 20세기 중반의 히틀러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실패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것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기반 그리고 주요한 자본 축적자들이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해관계가 세계경제를 세계제국으로 변형시키는 일과 근본적으로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Wallerstein, 1993: 60) 월러스틴에 따르면 “세계제국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의 우선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정치적 구조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Wallerstein, 2005: 136) 따라서 특정 국가는 세계제국을 건설하려 할 때마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들의 적대감’과 마주쳐야 한다. 세계제국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국제영역에서 지배를 실현하기 어렵다.

반면 헤게모니는 자본주의적 기업에게 아주 유용하다. 헤게모니는 세계질서가 상대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장기적 시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세계질서가 붕괴되는 시기에 세계체제의 주요한 경제적 장소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 혼란 속에서 “헤게모니는 자본주의적 기업, 특히 독점적인 선도산업들이 체제 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정성을 창출”한다.(Wallerstein, 2005: 137) 그러나 헤게모니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헤게모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게모니적 패권은 그 패권 자체를 정치적 역할과 군사적 역할로 분산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타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Wallerstein, 2005: 137) 안정적인 헤게모니 체제하에서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시작하며 헤게모니 국가의 헤게모니를 감소시킨다. 헤게모니 국가는 자신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게 되고 세계질서는 다시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시기에 다른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번의 헤게모니 순환이 있었다³⁵⁾. 이 순환은 역사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대영제국을 거쳐 미합중국에 이른다. 헤게모니 순환에 대한 설명은 “자본축적과 국가간체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데, 대자본이 헤게모니 국가를 배경으로 독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고이윤 부문을 선도산업이라는 형태로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백승욱, 2007: 84)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헤게모니 순환에서 국가의 역할이다. 자본은 스스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가라는 경제 외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특히 헤게모니 국가는 세계체제의 수준에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헤게모니 국가가 설계한 이윤창출 체제는 타국에 의해 모방되거나 강압적으로 이식되며 확산된다.

국가간 체제가 (세력균형이나 열강의 경합같이 좀더 일반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헤게모니 국면에 있을 때는, 한 국가가 체제의 구조를 만들고 거의 언제나 약한 국가들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자신의 체제의 정책들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한다.(Wallerstein and Hopkins, 1999: 13)

헤게모니 순환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 새로운 독점적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8세기의 영국과 20세기의 미국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35) 헤게모니 순환에 관한 입장은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러스틴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헤게모니 순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아리기는 브로델을 따라 월러스틴이 말하는 세 번의 헤게모니 순환에 앞서 제노바 순환을 덧붙여 네 번의 헤게모니 순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리기와 월러스틴의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를 16세기 이후 성립된 것으로 보는 반면 아리기는 13세기의 지중해 무역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고 있다. 이는 상업자본을 어떻게 자본주의의 역사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월러스틴은 16세기 이후에 발흥하기 시작한 산업자본주의를 그 기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생산양식의 발전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아리거나 브로델은 산업자본 이전의 상업자본을 자본주의의 기원으로 봄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을 생산양식이 아닌 축적양식의 변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백승욱, 2007)

한 국가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에 기반해 지적재산권 체제를 극단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통해 가장 많은 이윤을 얻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체제가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사회에 접어들며 정보를 자본의 생산수단으로 만들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허구적 상품이 그렇듯 정보 역시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상품화 된다. 헤게모니 국가는 정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고 그것을 세계경제에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장 지적재산권 체제와 정보의 상품화 과정

3.1. 정보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특성

본론 1장에서는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정보사회론자들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각 입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정보사회를 정보의 양적 증대라는 현상에 천착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그들은 정보의 양적 증대라는 현상에 기반을 두고 정보사회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을 야기시킨 정보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했다³⁷⁾. 정보의 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정보의 개별적 특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이 아

36) 물론 물질폐기론을 주장한 조지 길더나 이론적 지식의 우세라는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한 특징을 설명한 다니엘 벨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지 길더나 네그로폰테가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로 극소전자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점과 다니엘 벨이 서비스 산업의 ‘규모’ 확대라는 지점을 탈산업사회의 증거로 포착한 점은 그들의 핵심적인 논의가 정보의 양적 증대라는 현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7) 네그리와 하트가 지적하듯 “양적 지표로는 하나의 패러다임[산업화]으로부터 또 하나의 패러다임[정보화]으로의 진전에서 나타나는 질적 변형”을 파악할 수 없다.(2007: 371) 프랑크 웹스터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정보의 양적 증대를 통해 사회 정보화를 분석하는 논의를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정의로 분류해 분석한 뒤 정보의 질적인 변화라는 측면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스터(2007: 40-77)를 참조하라.

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정보의 위상이 변하였고, 그것에 근거해 정보사회가 성립 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른 정보의 위상변화는 정보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정보사회를 분석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오히려 정보기술에 대한 집착은 정보의 위상변화를 역사적 환경에 위치시키기보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분석의 원인이 된다. 댄 쉐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보의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정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제적인 사회적 구조를 밝혀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보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곧 사회의 재조직화만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Shiller, 1994: 51)

정보는 정보기술의 혁신 이전에도 존재했고, 현대사회에서 그 개별적인 특성이 변화한 것도 아니다. 변화한 것은 정보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정보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하는 상품’으로 질적 도약을 겪게 된다. 자원이란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것을 지칭한다. 자원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상품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속에는 사회와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따른 정보의 위상변화와 그것이 상품화 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 이후 정보의 위상이 달라졌다. 정보기술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분산된 수많은 정보들, 특히 시청각 정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쉽게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³⁸⁾. 아날로그 시

38)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기)의 생산방식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대 미디어 산업의 핵심적 화두인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를 예로 들 수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탄생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정보의 융합(음성·데이터·영상의 융합), 네트워크 융합(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 그리고 기기의 융합(컴퓨터·통신·정보가전) 등이 속한다. DMB나

대에는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간단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그 신호들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들이 생산 된다. 아날로그 방식은 지각내용의 물리적 속성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디지털방식은 정보를 비연속적인 분절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처리할 때 디지털 방식은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 정보의 단위를 1과 0이라는 비트로 분화시켜 이의 연속된 흐름을 전송함으로써 (아날로그에서와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디지털 방식의 정보처리 및 전달 과정에서는 음성, 문자, 영상 등 모든 정보 형태가 등질화되어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손동현, 1999: 125)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 생산 방식이 크게 변하게 된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통합 혹은 통합된 정보의 재배열 자체가 하나의 생산방식이 된다³⁹⁾.

그러나 생산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네트워크, 즉 인터넷⁴⁰⁾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이나 네트워크 어느 하나만으로는 최근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전화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의 혁명적 변화는 이 둘의 결합, 흔히 말하는 비트와 네트의 결합, 혹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강남훈, 2000: 12)

IPTV, Mobile,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영역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39) 휴대폰 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2000년대에 들어 카메라, 문자, 메일,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기능이 첨가된 멀티미디어가 되었다. 최근 휴대폰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중 하나는 멀티미디어의 복잡한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터페이스는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산업영역 중 하나인 것이다.

40) 인터넷이란 특정한 통신망의 명칭이 아니라 ‘인터넷워킹’의 줄임말로,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된 통신망의 총칭이다.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정보기술 혁신은 정보의 생산·유통의 혁신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유통의 혁신에 기반해 사회적 경관이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혁신에 기대어 정보의 가치가 극도로 높아진다. 정보는 정보사회에서 생산력의 기초가 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보는 상품화에 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특성은 비소모성, 비이전성, 누적효과성, 비분할성, 자기조직성, 전유불가능성, 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가치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다시 말해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⁴¹⁾. 이와 같이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정보의 반자본적 속성은 자본의 불안 요소이다. 자본은 자본의 외부를 연상시키는 대상을 자본 내부로 포섭함으로써 그 불안을 잠재시키려 노력한다.

정보기술의 혁신은 정보의 생산·유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정보를 생산·유통시킬 수 있는 장비의 소형화와 가격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정보가 특수한 기술자나 부유층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서도 생산·유통될 수 있게 했다. 정보기술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Free)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움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기술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경제적으로 저렴하게(무료에 가깝게, Free)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정보가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급격한 사회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가 자유롭게(무료로) 생산·유통된다는 것은 자본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일

41)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말은 이러한 정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Liang-Mazmdar-Suresh, 2005에서 재인용)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역시 버나드 쇼와 정보에 대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다. 따라서 자본은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사유화·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⁴²⁾ 체제는 허구적 상품인 정보를 상품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3.2. 초기 지적재산권 체제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지적재산권은 지식이나 정보를 사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초기의 저작권(copyright)은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았다. 저작권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등장했다. 저작권은 1496년에 시행된 출판특허제를 그 제도적 효시로 해서 16세기 초에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명과 연관되어 있다. 인쇄술의 발명에 따라 “지식과 지식 창안자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로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는 “근대 인쇄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적 제도”로 평가된다.(백옥인, 1997: 75-6) 그러나 이때의 저작권 제도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발달하면서 넘쳐나는 출판물을 검열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앤 여왕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과거의 저작권법과 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자의 권리를 등장시킨 것이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집이나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으므로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 없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출판업자들은 한 번 판매된 저작물의 권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앤 여왕법은 이러한 출판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기간을 한정⁴³⁾했다. 그리고 앤 여왕법은 “서문에서 ‘의심할 바

42) 지적재산권은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창작물 등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그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일반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으로 나뉘며, 이 외에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권,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디지털콘텐츠, 유전자자원,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등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나뉜다.(양희진, 2005)

없는 재산을 가진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저작물도 출판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저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 저작권의 기간 한정이나 저자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Patterson, 1968: 143-150) 저자(author)라는 개념은 출판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저작권은 엄밀히 말하면 '저자의 권리'(author-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 혹은 right to print)였다. 저자 개념 자체가 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출판업자들의 독점적 복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의 저작권법은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⁴⁴⁾. 그러나 초기 지적

43) 앤 여왕법은 1710년과 그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21년을, 신간에 대해서는 14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신간의 저작권 보호기간인 14년이 만료된 후 저자가 살아 있는 경우 추가로 14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된다.(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

44) 초기 지적재산권법의 반독점적 특성은 저작권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특허 역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의 공식적인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 지방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의 기술자들 중 일부는 독특한 자신의 기술이나 발명을 기록하지 않고 도제들에게 직접 전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른 부류의 기술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공개될 경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고 '발명의 기술적 내용은 암호 등 일반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발명이 비밀에 싸여 있는 한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식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5세기의 특허법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윤성식, 2000: 40) 이크발(Ekbal, B)에 따르면 초기의 특허법은 지식이 발명자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Ekbal, 2008) 이 당시 베니스 특허법은 현대 특허제도가 발명의 조건으로 삼는 '새롭고, 유용하며,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했고, 특허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이 기간 동안은 특허 받은 발명의 모방을 금지시켰다.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특허법은 지식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누구나 쉽게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법의 또 다른 목적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인들을 외부로부터 끌어 모아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베니스로 끌어 모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영국의 경우 16세기에 특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 역시 '대륙의 기술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도구였다. 다시 말해 특허는 정보나 지식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18세기의 영국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국내 거주나 특허 실시를 요구하지

재산권의 반독점적 특성은 18세기 초 영국(특허의 경우 15세기 베니스)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난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나 지식을 상품화하는 법적 담지자로 기능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처음부터 특정한 개인이 지식과 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고, 그 소유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를 지나면서 서구 각국은 저작권법을 도입하게 되고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특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앤 여왕법을 시작으로 미국은 1790년, 프랑스는 1791년,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은 1871년에 저작권법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각국에 저작권법이 도입되면서 지적재산권은 하나의 세계체제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3.3. 개인 혹은 저자 - 정보 소유권자의 발생과 자본주의적 변형

초기 지적재산권의 의미는 지금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18-19세기를 경유하며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를 상품화하는 법적 담지자로 변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지적재산권이 성립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정보를 상품화 시키는 법적 담지자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의 소유권자인 저자⁴⁵⁾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저자의 발생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정보의 상품화가 역사적으로 극히 최근에 등장한 독특한 현상이며,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3.3.1 개인의 발견

않았”으며, “자유로운 특허 조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강제사용허락조항(1883)과 강제실시권 조항(1907)”이 법에 삽입되었다.(윤성식, 2000: 42) 강제사용허락조항이나 강제실시권 조항은 기술이 공익에 반해 사용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독점적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45) 저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의 창조자이면서 소유자이다. 따라서 정보의 소유권자로서 저자의 발생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특허나 상표의 소유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정신적 노동을 통해 창조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자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적재산의 소유자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소유권’은 당연한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극히 최근의 일이다⁴⁶⁾. 소유권이란 특정한 물(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에는 소유권을 가진 특정한 개인과 (그 개인과 구별되는) 타인의 존재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은 물(物)을 매개로 소유권자와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타인과 분리된 개인(individual)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리하르트 반 뢰덴(Richard Van Dülmen)은 『개인의 발견』에서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실현한다는 생각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개인은 흔히 르네상스시기에 발견된다고 여겨져 왔지만, 뢰덴에 따르면 중세에도 신과 대면하는 종교적 개인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는 “계몽적 사고와 시민적 사고라는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대적 개인은 18세기”에 등장한다고 말한다.(Dülmen, 2005: 11) 그는 ‘개인이나 시민적 자율주체’라는 현대의 생각을 그대로 과거에 투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뢰덴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의 발견을 ‘지적-정신적 행위’만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화 과정은 처음부터 “사회발전과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적 확장과 결부”되어 있었다.(Dülmen, 2005: 13) 개인의 발견은 ‘공동체와 구별된 존재인 개인’이라는 관념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각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 삶의 새로운 태도가 관철되는 것이다. 소유권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회적 상황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가져야할 덕목이 변화하는 지점이다.

46) 이찌 타로(甲斐道太郎)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받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라고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소유권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그의 『소유권 사상의 역사』(1984)를 참조하라. 현대적 의미의 소유란 ‘타인에 배타적인 사적 소유’라는 관념과 그것의 전 사회적 보편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원래 소유라는 개념은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시적, 통시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봉건 사회만 해도 “배타적인 사적 소유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독점과 중점적 양여 체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소유의 개념과 소유권의 사회적 보장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가토 마사노부(加藤雅信)의 『소유권의 탄생』(2005)을 참조하라.

뮐멘에 따르면 “중세 후기와 근대 후기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은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이었다.(Dülmen, 2005: 216) 물론 당시에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자기 이익만 차리는(이기적) 행동’으로 규정되었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 초기 사회에서는 공익의 추구가 높은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기적인 형식들은 모두 아주 단호한 처벌을 받았다.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길드나 공익을 저버리고 사업을 독점화하려는 상인은 모두 ‘이기적 행동’이라는 명목으로 고발당하고 처벌” 받았다.(Dülmen, 2005: 218)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공익을 우선시 하는 풍토는 18세기까지 유지되었다⁴⁷⁾.

18세기에 이르면 사회를 주도하는 질서가 공익에서 사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시민의 핵가족’이 탄생하고, ‘공적인 복장 규정’에서 벗어난 개인적 표현으로서의 의상이 보편화되어 갔으며, ‘노동공간과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사적 공간이 발생한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적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은 정치적·경제적 사고의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홉스(Thomas Hobbes)와 로크(John Locke)는 국가에 선행하는 정치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킨다. 홉스는 국가가 신적 권력의 담지자가 아니라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로크는 “국가가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종속계약을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Dülmen, 2005: 245)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천부적 권리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의 재산권’이다⁴⁸⁾. 또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 역시 경제적 개인

47) 공익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18세기까지 절대적인 규범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뮐멘은 16세기 후반부터 구체적인 사회현실이나 경제 현실의 모습이 변화하며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5: 218-223)

48) 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윌리엄 피셔(William Fisher)는 지적재산에 관한 이론들을 공리주의, 노동이론, 인격이론, 사회계획이론의 네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피셔에 따르면 로크는 이 중 두 번째인 노동이론의 핵심적인 이론가이다. 로크는 공유된 자원에 개인의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정당하게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적)노동의 대가로 얻는 (지적)재산’이라는 사상은 지적재산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피셔는 지적 노동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연적 이유와 인간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earth)를 지

주의를 주장하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복시켰다. 개인의 이윤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 사회의 일반이익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는 사고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치적, 경제적으로 타인이나 공동체와 구별되는 개별적 권리자가 탄생했다. 정보의 소유권자인 저자 역시 이 같은 역사적 조건이 마련된 18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3.3.2 앤여왕법과 저자

앞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으로 알려진 앤여왕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등장한다⁴⁹⁾. 앤여왕법이 제정되던 18세기는 영국 역사 속에서 산업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으며, 공공영역이 서서히 해체되어 사적이고 상업적인 영역 속으로 편입되어 가던 시기였다.

공유지의 대대적인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때와 지식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때는 거의 일치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농지구획사업의 역사, 중세 이래로 서서히 진행되어오던 농지구획 사업이 18세기 중반에 대규모로 급속히 - 의회의 주도하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 이뤄진 과정과 저작권의 발달 과정은 매우 흡

배하는 능력을 신이 부여했다는 종교적 이유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을 통한 재산권의 획득은 다른 이들이 이러한 재산권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뿐 아니라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저하시킬 수도 있다.(Fisher, 2001)

49) 엄밀히 말하면 저자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나 특정 예술작품의 기원을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이거나 미학적인 가치를 가진 특수한 영역과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저자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인쇄술의 발명 이후였다. 인쇄술은 저자의 품을 떠난 독립적인 작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도 저자의 개념은 특별히 대중화 된 것은 아니었다. 작품의 최초 생산은 저자에 의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의 대량생산은 인쇄기를 가진 출판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로 작품은 저자가 아닌 출판업자(출판업자는 단순히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저자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에게 귀속된 소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 출판업자들의 독점 방지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 현대적 소유권 개념의 등장 등의 상황이 연동되며 현대적 의미의 저자가 탄생한다.

사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던 시기는 영국의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일고 있던 시기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 일종의 교환가치를 획득한 시기였다.(신경숙, 1997: 129-130)

공공영역의 사유화라는 자본주의적 흐름에 따라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 교환가치로 환원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앤여왕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전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영역의 해체와 사유화, 저자의 발견이라는 사건들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앤여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출판업자들의 횡포뿐 아니라 이전 작품들에 대한 표절, 차용, 모방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1688년 제라르 랭배인(Gerard Langbaine)은 당시에 출판되던 작품들을 살피고, 표절된 작품의 기원을 명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랭배인은 ‘출처사냥(Source-hunting)’의 시조가 되었다. 토마스 더피(Thomas D'Urfey)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의 표절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7,8세기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펜대를 놀린 매문가의 대표’로 꼽힌다. 랭배인의 최초의 출처사냥은 더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더피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더피 이전에도 수많은 표절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역시 더피와 마찬가지로 다른 작가의 작품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랭배인의 책에는 “셰익스피어가 다른 작가로부터 빌려온 내역을 수록한 부분은 더피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이현석, 1997:86) 랭배인에 따르면 타인의 작품에서 구절을 빌려오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일이 17세기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랭배인은 더피와 달리 셰익스피어를 표절자로 매도하지 않았다. 그의 표절 선정은 오로지 “동시대의 작가”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셰익스피어는 자기 시대의 “통상적인 예를 따라 입수 가능한 선조들의 텍스트를 일종의 공공재산으로 간주하여 활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이현석, 1997:86-7) 셰익스피어에게 선대의 텍스트들은 일종의 ‘공동 기금’과 같았고, 다른 이가 먼저 다루었던 제재를 다시 다루더라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당연히 공동체의 몫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대의 업적들 중 잘된 것을 당연

히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것으로 간주”했다.(이현석, 1997: 88) 말하자면 당시에 쓰여진 모든 텍스트들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적영역에 속하던 것들이 (인쇄술의 발명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18세기에 들어 ‘저자’의 탄생과 더불어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현대적 의미의 저자는 앤여왕법을 통해 법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출판업자들의 독점권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저자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낭만적 저자상을 만들어낸 담론 지형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에서 출판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출판업자들은 1662년에 제정된 출판허가법(Licensing Act)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출판허가법은 국왕이 출판물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1695년에 효력을 상실한다. 출판업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던 독점권을 상실하자 판권을 무시한 다른 출판업자들의 해적행위가 창궐하게 된다. 그들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했으나 반대진영에서는 “어떤 종류의 독점도 국가적 이익에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현석, 1997: 92-3) 당시 출판업자들이 기대고 있던 골수 왕당파는 1704년 온건 왕당파와 휘그들의 연합진영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독점권을 보장해줄 법을 부활시키는데 실패한다. 당시 연합진영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에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이다. 그는 1703년 『출판 규제론』(An Essay on the Regulation of the Press)을 저술했다.

디포우가 보기에 출판허가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언론을 당파의 노예로 만듦으로써 대중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골수 왕당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디포우는 출판허가제를 통해 언론과 출판을 ‘사전검열’하는 것보다 ‘무질서한 출판을 제한’하여 불온한 저작이 출판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저작을 저술한 작가를 ‘사후 처벌’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후 처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익명의 저작’을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을 반드시 표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ose, 1994: 35) 디포우의 이러한 주장이 흥미로운

점은 저자의 명기를 재산권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는 작가가 자신의 저작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만 그 저작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앤여왕법이 제정될 때) 법을 통해 “서적에 대한 저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ose, 1994: 36) 디포우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상 저자의 재산권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앤여왕법은 저자의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보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출판업자들의 독점권을 현저히 축소시켰다. 그러나 출판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은 시간이 흐른 후였다. 그들의 불만은 앤여왕법에 명시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터져 나왔다. 그들의 목적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출판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얼마 남지 않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있었다. 출판업자들은 그 목적에 맞는 법안제정을 의회에 청원했고, 반대세력과 다시 논쟁을 시작한다. 논쟁은 “외국 해적판 유입의 부당성 여부가 아니라 출판업자들의 현실적 출판독점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출판업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이 이론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하는 데에 집중”되고, 후에 이 논쟁은 “작가에게 과연 다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창조성’이나 ‘독창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논란을 유발”하게 된다.(이현석, 1997: 99-103) 작가의 창조성 논쟁에서 설득력 있게 인용된 것이 ‘토지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앤여왕법의 초안을 작성한 에드워드 워틀리(Edward Wortley)의 친구 조지프 애디슨(Joseph Addison)의 글에서 발견된다.

작가들의 천부적 재능은 동일해도, 그것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화창한 기후의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풍광 속의 고귀한 초목들을 무질서하게 방치하지만, 다른 이들은 똑같은 화창한 기후의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나는 그 초목들을 정원사의 솜씨로 아름답게 일궈내 산책로와 화단으로 만들어낸다.(Rose, 1994: 41에서 재인용)

이 토지의 비유를 통해 작가의 창조작업을 토지와 동일시하게 되자, 지적재산권은 물적 재산권과 비슷한 정도의 구체적 실체성을 띠게 된다. 요컨대 이 논쟁을 통해 작가의 지적, 창조적 능력은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이 되고, 그 결과물인 작품은 상품이 된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현대적 저자는 타인의

소유물과 저자의 소유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18세기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결정판’ 혹은 특정 작가 ‘전집’의 편집 열기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확립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때 내가 쓴 글과 타인이 쓴 글을 구별하는 인용부호⁵⁰⁾와 같은 문법적 규칙이 표준화되고 그것의 강제적 사용이 의무화된다.

3.3.3 개인에서 기업으로: 정보 소유권자의 자본주의적 변형

저자란 지식이나 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을 구조화 시키는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허구적 개념이다⁵¹⁾. 이러한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소유권자가 창작자로서의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보 소유권자의 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크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제도화와 함께 개인창작자의 이득은 거대 기업의 이익으로 대체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창작자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독립된 발명가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착취당한다.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해당 조직의 저작이나 특허가 된다.”(Ekbal, 2008)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독창성과 영감을 가진 낭만적 저자라는 개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Liang-

50)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인용부호가 완성된 것이 18세기 후반이다. 18세기 이전에도 인용부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용부호는 그 인용된 구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읽을 필요가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였다. 여기서 특정 구절이란 새롭거나 독창적인 구절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과 같은 (성서라든가 상식 모음, 격언이나 속담 따위) 의미를 지녔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인용부호가 강조하는 구절을 처음 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은 대개 인용문의 상당 부분을 숙지한 상태에서 그 구절을 다시 읽음으로써 자신의 기억을 버리는 것이었다. 요컨대 인용부호는 특정 구절을 감싸는, 즉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정확히 표시하는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이현석, 1997: 115)

51) 저자 개념이 가진 허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3장 끝에 있는 보론(저자: 창작과 소유의 괴리)을 참조하라.

Mazmdar-Suresh, 2005) 정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기업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정보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성립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의 창작자가 생산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창작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자기 소유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자가 창작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창작물이 창작자로부터 분리되어야 ‘개인 생산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창작자의 소유가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라는 형태로 기업이 개인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 받는 것이다.

먼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자. 18세기 이후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작품을 창작하는 ‘낭만적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개 노동자(creative worker)로 전락한다. 저작권법 내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⁵²⁾.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개인일지라도 작품의 실질 소유자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업이 된다. 이렇게 기업은 작품의 소유자, 즉 저자가 된다. 여기서 저작권자로서의 기업은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을 주고 그 저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된다.(Liang·Mazmdar-Suresh, 2005)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방송작가, 소속 배우, 소속 음악가 등 기타 인력과 설비를 투입하여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방송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작품은 물론이고 ‘사용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실연 등에서의 권리’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52)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것을 공표한 “법인”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저작권법 제41조)한다.

“외부의 독립제작사를 활용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자체 제작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방석호, 2007: 121) 따라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이 향후 다원적으로 활용될 때에도 개별 권리자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조항은 저작권법이 개정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⁵³⁾을 고려해볼 때, 정보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통과정에서 창작물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이 유통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작자는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데 개별 창작자는 직접 판매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품의 유통로를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개인 창작자가 판매자가 된다 하여도 거대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판매의 유통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받는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직접 판매 활동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계약하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산업의 제작 기업들에 고용된다. 고용이나 계약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기도 하지만 일정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 창작물의 저작권을 그 기업에 양도하게 된다. 그렇게 통제된 지적이고 문화적인 창작물들은 시장에 나서게 되고 소비자를 만나 판매되는데, 그 판매의 수익과 함께 (개별 소비자의 일회적인 사용 이외의) 재사용 과정의 수익(로열티) 역시 실질적인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로 가는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자본운동을 위해 재투자 된다. [...] 창작물을 통제하던 개인 창작자는 없어지고, 소유 권리의 재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성(개성)은 그래서 자본이 된다.(조동원, 2007)

53)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기존 저작권법에 있던 업무상 저작물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상 저작물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에 기재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는 요건과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삭제되었다.(방석호, 2007: 98)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거 보다 더 쉽게 법인 명의의 업무상 저작물이 탄생하게끔 되었다.

이처럼 지적재산이 상품이 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창작자와 창작물은 분리되어야 한다.(Darch-Halbert-Story, 2006: 55) 창작자와 창작물이 분리되고 나서 창작물은 기업소유가 되고 창작물의 판매에 따른 보상은 기업으로 들어간다⁵⁴). 이에 따라 창작자의 개성은 기업의 자본이 되는 것이다.

3.4.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앞서 지적했듯이 지적재산권은 하나의 제도로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형성되어 왔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역사도 살펴볼아야 한다. 이 절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흥성 때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정보를 상품화시키는 담지자가 되어가는 제도적 흐름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자본주의가 정보적으로 확장되어가는 현상을 네 가지 역사적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의 모색기로 지적재산권이 태동한 15세기 후반부터 개별 국가에서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19세기 후반까지를 가리킨다. 두 번째 단계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 본격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확립되기 전

54) 이러한 논리는 저작권이라는 개별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다. 오늘날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지적·금전적 원조를 받든가, 설비를 이용한다든가, 타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중심의 발명에서 조직 중심의 발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조직 내에서 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 이는 직무발명이 된다. (종업원의 발명은 직무발명 이외에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이 있다. 업무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자유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발명에 대한 권리는 해당 조직(기업이나 국가)으로 귀속된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 종업원은 법적으로 “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 공무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이나 파트타임제 종업원”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윤선희, 2007: 56-64)

까지를 가리킨다. 세 번째 단계는 구미 각국의 주도로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추구된 시기로, WIPO가 확립되어 가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이다.(홍성태, 2000b)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단계의 특성과 전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단계인 지적재산권의 성립기에 이 체제는 반독점적 특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자 지적재산권 체제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처음부터 특정한 개인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 독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지적재산권 체제에서 국가가 특정한 개인의 정보 소유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상품교환이 결코 자본의 경쟁 논리나 내적 정당성에 의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월러스틴이 지적하듯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행위자는 국가이고, 국가만이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할 합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보호가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Wallerstein, 2005: 113) 상품교환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국가라는 자본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체제의 성립 이후 정보에 대한 독점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인 19세기 말부터이다. 이 시기는 개별적 국가에 도입되어 있던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세계체제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지적재산권은 1883년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과 1886년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기반을 둔다⁵⁵⁾. 1893년에는 이 두 협약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지적재산권

55) 파리협약은 1884년 7월 7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그 후 1900년 브뤼셀,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개정회의에서 의정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파리협약은 이처럼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2000년에 와서야 157개 동맹국이 가입하게 되었다. 베른협약 역시 1886년 체결 이후 1896년 파리, 1908년 베를린, 1914년 베른, 1928년 로마, 1948년 브뤼셀, 1967년 스톡홀름, 그리고 1971년 파리에서 각각

보호 국제 합동사무국(BIRPI: 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United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Property)이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력범위가 자국민이나 자국거주자에게만 미치고 외국인 또는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국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이에 따른 표절과 모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양희진, 2005: 14)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국제적 협력 시대를 여는 최초의 협약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협약들은 어디까지나 선진국들 간의 협약이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관련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파리협약에서는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 완전히 통일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차이는 사라졌다. 대신 “2차 대전 이후에 대거 등장한 제3세계의 신생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홍성태, 2000b: 167-8)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선진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분명한 목표의식 속에서 형성된 단계이다. 이는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지적재산(정보)에 기반을 둔 착취 체제를 확립해 가는 단계이기도 하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19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약이 체결되었고, WIPO는 그 조약에 따라 1970년 제네바에서 설립되었다. WIPO는 특히 특허제도를 통일화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허는 “신물질의 발명(물질특허), 새로운 제조기술(제법특허), 새로운 용도개발(용도특허) 등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홍성태, 2000b:168)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통일된 특허제도에 따르면 후진국이 선진국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화 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특

개정회의가 열렸고, 2000년에 와서 141개의 동맹국이 가입하게 되었다. (최경수, 2001)

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 된다면 후진국은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강하게 종속 되게 된다. 이렇게 지적재산에 기반을 둔 국가간체계가 구축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후진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은 개별적인 후진국의 낡고 전통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공간적 비대칭성에서 유발되는 불평등 교환 때문이다.

그러나 WIPO 체제 하에서는 지적재산에 기반을 둔 국가간체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통일된 지적재산권 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세계체제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적재산에 기반을 둔 국가간체계의 형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WIPO는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의 상황을 예로 들어 보자⁵⁶⁾. 화이자는 2차 대전 중 페니실린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이자 독자적으로는 전쟁 시기에 필요한 페니실린 수요량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을 증진시켰다. 화이자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화이자는 70년대 들어 위기를 맞게 된다.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도가 70년대 들어 복제의약품을 생산·수출하기 시작하고 남반구 국가들이 필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면서 화이자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양희진, 2005: 15)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달러의 심각한 평가절상 등으로 개도국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는 자본이 ‘기술적 우위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56)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계 무역거래 증가율면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OECD 산업별 연간 무역증가율을 보면 1996~2005년 동안 제약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약 14%로 전 산업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제약산업 중 매출 1위 기업이 바로 화이자이다. 화이자는 2006년 매출액이 451억 달러였으며 세계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의 43%를 차지한다. 그리고 매출규모 상위 10위 내의 기업 중 미국 기업이 5개인 점을 보면 세계 의약품 시장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볼 때 북미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48%, 유럽이 약 30%, 일본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개 지역이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87%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정 외, 2007: 33-44)

“WIPO에서 관장하는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선진국은 WIPO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역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양희진, 2005: 16)

1980년대 들어 화이자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자신들의 특허기술과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연계였다. 화이자의 대표이사였던 에드먼드 프랫(Edmund Pratt)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율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을 GATT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화이자는 무역과 지적재산권을 연계시킨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미국 무역법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N: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s)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프랫은 1979년 ACTN의 멤버가 된 후 1981년부터 1986년까지 6년 동안 위원장을 맡게 된다. ACTN은 미국의 경제계와 국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ACTN은 “미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무역관련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민간기구인 것이다.(Braithwaite and Drahos, 2002: 72) 프랫은 ACTN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관련 협상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ACTN 안에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도 했다.

프랫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수개월 전에 13개의 다국적 기업⁵⁷⁾들과 함께 또 하나의 민간기구인 지적재산권위원회(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IPC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일본의 업계대표들을 설득하여, 이들 정

57) 지적재산권위원회가 결성될 당시 참여한 다국적 기업은 브리스틀마이어스(Bristol-Myers), 듀폰(Du-pont), 에프엠시(FMC Corporation),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아이비엠(IBM),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메르크(Merck), 몬산토(Monsanto), 화이자(Pfizer), 록웰인터내셔널(Rockwell International), 워너커뮤니케이션스(Warner Communications) 이다.(Braithwaite & Drahos, 2002: 118)

부에게 우루과이협상 의제로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게 하였다. 결국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에 협상 의제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었다.(Braithwaite and Drahos, 2002: 118-9) 그리고 이것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본의 통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가능하게 한 TRIPs의 토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이 화이자와 같은 초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로비와 압력의 산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1980년대 이후 계속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1987년에는 총 1,59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과 자본의 연계를 통해”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길 원했다.(윤성식, 2000: 34) 기업의 요구와 국가의 필요가 맞물려 미국의 주도로 지적재산권 확대를 위한 국제협정이 진행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설계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82년 미국은 한국, 헝가리,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을 상대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일련의 쌍무회담을 시작한다. 미국은 헝가리, 대만,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자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을 연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변화된 통상정책의 최초 대상이 된다. 1985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던 것이다⁵⁸⁾.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적 차단비용이 사회적 차단비용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러스틴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요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업이 어떤 비용을 내부화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비용에서 기업이 실제로

58)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10월 16일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과 지적재산권 협상을 시작하고 1986년 통상협상을 타결 하게 된다. 이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문화자본과 제약자본들이 만든 지적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내용을 전면 수용하는 대대적인 법 개정을 단행”한다.(남희섭, 2006: 543)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기업 생산비용의 외부화라고 한다. 비용의 외부화란 ‘생산비용의 일부가 기업의 대차대조표로부터 그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 곧 사회로 이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윤은 단지 “효율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에 얼마나 더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이다. 생산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다 부담하는 생산자는 거의 없다.”(Wallerstein, 2005: 114) 비용의 외부화는 “단지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국가 혹은 사회 전체로 이전할 뿐이며, 이에 따라 생산자의 이윤율을 크게 증대”시킨다.(Wallerstein, 1999: 69) 요컨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정보를 상품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선불리 판단해선 안된다. 이 논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듯이 국가는 자본과 다른 조직원리를 가진 독립적인 사회적 층위이다. 국가가 자본의 이윤축적을 돕고, 축적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의 제도적인 자기이해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국가가 자본의 이윤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특정의 정부와 역시 축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정 계급 사이의 연합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권력 담당자로 하여금 계급이해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국가에게는 거부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조건지어지는 국가의 제도적인 자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Offe & Ronge, 1985: 217)

국가와 자본은 공통된 이해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밀히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키는데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 물적 자원은 사적 축적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원에 의존해서(조세를 통해) 확보된다. 정보사

59) 이런 의미에서 강남훈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차단비용을 절감하거나 사적 차단비용을 사회적 차단비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의 상품화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말한다.(강남훈, 2000: 24)

회에서 생산성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상품화 시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상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 및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자본의 정보적 확장은 네 번째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강제력을 갖춰나가는 단계이다. 자본주의 정보적 확장의 네 번째 단계는 WTO/TRIPs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94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며 막을 내렸다. TRIPs협정은 WTO의 부속협정이다. TRIPs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조약에서 나온 개념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소보호기준 설정과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최소보호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그 수준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회원국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역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양희진, 2005: 17) 또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TRIPs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러한 원칙들은 TRIPs협정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일반적인 무역의 대상으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이다. TRIPs협정은 이전의 지적재산권조약을 포함하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관행 통제 등의 분야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민간화 된 이후 정보의 위상과 질적 변화에 따라 그 정보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간다. TRIPs는 변화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신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되던 지적재산권의 구성자재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권의 대상으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산업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생명 공학기술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자산이 등장하면서 신지적재산권이 형성되었다. TRIPs는 이에 대한 보호도 더욱 명확하게 하거나 강화하였다. 특히 정보재산권은 TRIPs에서 교섭항목으로 채택되면서 중요

하게 부각되었다.(홍성태, 2003: 53)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정보형태의 등장은 지적 재산권체제의 변화를 수반한다. 하지만 TRIPs협정을 통해서도 초국적 기업이나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체제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었다. 변화된 정보 환경에 맞는 지적재산권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다. WIPO는 1991년부터 6년 동안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으며, 1996년 12월 3주간의 외교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WIPO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⁶⁰⁾(이하 WIPO 신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베른협약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베른 협약상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베른 플러스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Reinbothe and Lewinski, 2002: 495), 국제협약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 중 하나인 내국민대우가 반영되었다.(Reinbothe and Lewinski, 1997: 171) WIPO 신조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기술과 조약간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다.(박노형 외, 2002: 20) 기존의 협약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기술 발달에 따른 지적재산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제외하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 WIPO 신조약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간다.

WIPO 신조약에서는 공중전달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항을 만들고 ‘복제’의 개념을 확대했다. WIPO 신조약에서는 공중전달권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WCT 제8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동시적, 유무선, 쌍방향, 주문형 송신도 공중전달권의 대상’이 되었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술 조치에 대해, 이것을 우회하려는 장치를 수입, 제조,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복제의 개념을 확

60) WIPO 신조약은 1996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으로 구성된다. WCT는 2002년 3월 6일, WPPT는 2002년 5월 20일 발효되었다.

대해서 “컴퓨터 메모리 저장을 포함한 디지털 형태로의 저장도 ‘복제’라는 성명을 채택”했다.(오병일, 2000: 92-3) WIPO의 신조약은 이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형성이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TRIPs협정 이후 “특허권보호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순수 로열티가 연간 1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TRIPs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양희진, 2005: 18)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와 그것을 보장해줄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WTO의 다자적 포럼에서 FTA의 양자적 포럼으로’ 협상 테이블을 옮기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 협정에서 무역체제를 무기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TRIPs나 WIPO 신조약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세계체제 수준에서의 통일된 기반이 마련되었고, 미국은 그 기반 위에서 FTA를 통해 정보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TRIPs 플러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TRIPs의 규정보다 강화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FTA에서는 역진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FTA 비준 이후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법을 개정할 때 보호와 집행 수준에서 협정문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화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⁶¹⁾. 뒤에서 보게 될 4장에서는 한미FTA를 사례로 미국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이 맺고 있는 수많은 FTA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설계하고 강화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모습과 경향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5. 정보의 자본주의적 포섭 : 경제외적 강제와 감시

61)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저자 사후 50년보다 20년 연장하였다.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을 80년이나 100년으로 늘리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70년 이하로 줄이면 협정 위반”이 된다.(남희섭, 2007a: 537)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은 양적으로 줄어들거나 그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이용할수록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전체의 후생과 이익은 더 커진다”.(양희진, 2005) 특히 네트워크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증진시켰다. 네트워크의 힘이 가진 긍정적인 가능성은 타인에게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정보는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며, 정보기술의 혁신은 공유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된다.

마크 포스터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보의 특성을 “자신의 상품화에 맞선다는 점”에서 찾는다. 나아가 그는 “정보의 손쉬운 복제와 이동은 물질적 상품 특유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자 하던 법률체계를 허물어뜨린다”고까지 주장한다.(Poster, 1994: 60) 이렇게 주장할 당시 포스터는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기술과 그것이 가진 가능성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발달한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WTO/TRIPs나 WIPO 신조약 그리고 FTA와 같은 잇따른 지적재산권체제의 강화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상품화 전략이 잘 드러난다. 포스터는 정보의 상품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유보시켰다. 그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아날로그 시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구조”에 속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문화적 혁신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법에 불과”하며 “정보는 부로 저작권은 그것의 경찰권력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한다.(Poster, 1998: 3)

포스터의 말은 자본의 외부에 있던 영역을 내부로 포섭하기 위해서, 즉 허구적 상품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외적 강제로서의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자본이라는 하부구조에 의해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품교환이 국가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가라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품교환은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는 교환이고, 그 원리는 약탈 즉 국가를 낳는 교환 원리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한 지배 하에서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폭력을 금지하는 국가와 법이 없으면 약탈이 생겨 상품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柄谷行人, 2007: 78-9)

국가는 법적 장치를 통해 상품교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창출한다. 법은 금지 명령과 처벌 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내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헌법학자인 레식은 법이란 단순한 “법률 텍스트가 아닌 삶의 방식, 즉 구조 (architecture)”라고 말한다.(Lessig, 2002: 36)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은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것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설립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이다.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용 가능성이나 ‘강제성’은 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추가되거나 추가되지 않을 수 있는 외재적이거나 부차적인 가능성이 아니다. 그것은 법으로서의 정의 개념 자체에, 법이 되는 것으로서의 정의, 법으로서의 법 개념 자체에 본질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힘이다.(Derrida, 2005: 15)

법의 강제성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법은 사람들에게 규율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법의 요구를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이 가진 ‘권력의 기술’이다. 미셸 푸코는 규율을 내면화하는 ‘권력의 기술’이 발휘되는 것은 ‘감시’를 통해서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감시는 파놉티콘(Panopticon⁶²)에서 나타나듯이 시선의 비대칭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시성의 영역에 놓인 피감시자와 비가시성의 영역에 놓인 감시자의 비대칭성이 그것이다.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위가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에 놓이게 된다. 이 불안 속에서 피감시자는 감시자의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 피감시자는 감시의 환영을 창조하는 극장 위에서 규율권력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2) 파놉티콘(Panopticon)은 Pan(all) + Opicon(seeing 또는 vision)의 합성어로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다.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이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의 원칙이 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점차 무형적인 것으로 된다. [...]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결정되는 영원한 승리인 것이다.(Foucault, 2006: 314)

지적재산권도 감시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법이 위반자들에 대한 감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법은 정보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의 중요한 원천인 정보 그 자체의 속성을 규정하는 법만큼 감시의 방식도 포괄적이고, 위협적이다. P2P(Peer to Peer) 방식⁶³⁾으로 음악을 공유하던 사이트인 냅스터가 음악 저작권 단체에게 고소를 당한 ‘냅스터 사건’이 좋은 사례이다. 냅스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콘텐츠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콘텐츠 중 99.4퍼센트의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냅스터의 변호인에게 “99.4퍼센트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영(0)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의 말대로 “99.4퍼센트도 불충분하다면 이 전쟁은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파일공유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Lessig, 2005: 128)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은 법률을 통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공간 상의 지적재산권은 앞으로 그 안에 내장된 기술적 코드를 통해 규제될 것이다. 레식은 “코드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지적 재산을 우선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Lessig, 2002: 286) 코드는 인간의 가치가 배제된 기계적 감시, 즉 전자감시⁶⁴⁾를 가능케 한다. 자본이 이

63)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서버의 도움을 얻어서 개인 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미리 주소(IP address) 등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서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앞의 경우에도 접속 및 검색 단계 이후는 뒤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인끼리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게 된다.

64) 들뢰즈는 극단적인 전자감시 사회를 전자 파놉티콘 사회라고 이야기 하며, 전자파놉티콘 사회는 규율사회(disciplinary society)가 아닌 통제사회(societies of control)라고 말한다. 규율

런 식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보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것, 즉 지적재산권의 코드화는 상품화가 (특수한)일부의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모든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이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은 자본의 외부를 연상시키는 불안요소를 내부로 포섭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이러한 포섭이 자본의 내적 힘이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하는 힘(국가, 법, 코드)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10월 고등법원은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치 분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소리바다 측은 불법 파일의 98% 혹은 그 이상을 필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적극적 필터링’이 아닌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판결에 사용한 개념인 소극적 필터링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이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불허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 필터링 방식은 “권리자들 사이의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이다.(정보공유연대IPleft, 2007b) 재판부가 판결에서 사용한 ‘적극적 필터링’이라는 개념은 정보 공유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허가 받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냅스터와 소리바다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모든 정보가 국가와 자본의 감시·통제 아래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정보 자본주의의 법적 논리를 보여준다.

지적재산권은 이처럼 철저한 감시와 그에 따른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 체제 내로 실질적으로 포섭되어 간다. 김영식은 저작권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글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것은 유나바머 선언문(The Uniabomber's Manifesto)이라고 알려진 글의 한 구절이다. 이 선언문의 각주 16번에는 “만약 저

사회는 감시의 언어(watchword)를 통해 규제되는 반면 통제사회는 코드를 통해 규제된다. 통제사회의 코드는 통과 암호(password)이다. 통제사회는 컴퓨터가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Deleuze, 1992)

작권법이 문제가 되어 게재가 불가능하다면 주16을 다음 문장으로 바꿔주기 바란다”는 구절이 나온다.(Kaczynski, 1996: 150) 유나바머는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16차례에 걸친 폭탄테러를 행한 현대 사회의 가장 위협적인 테러리스트 중 하나이다. 그는 “폭탄테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저작권법 때문에 자기 글이 실리지 못할 까봐 우려했던 것”이다.(김영식, 2000: 155)

유나바머는 1995년 테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유력지에 과학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과학기술문명비판논문 게재를 요구했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에 그의 논문이 실렸다. 이것이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제목을 가진 유나바머 선언문이다. 선언문에서 그는 자신의 테러를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하며 “혁명의 목표는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현존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테크놀로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aczynski, 1996: 39) 그는 현대사회를 병들게 한 것은 각종 테크놀로지라고 비판하는 극단적인 기술혐오자였고, 주된 테러 대상도 대학에서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학자였다. 문제는 그의 공격 대상인 각종 테크놀로지가 자신이 존중하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96년 체포 당시 그는 산골 오두막집에서 전기와 수도도 없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현대문명을 등진 채 살고 있을 정도로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정작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을 문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적재산권은 이처럼 인간의 의식 영역에 침투해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을 위해 지적재산권 체제가 지향 하는 목표는 바로 이러한 극단적 감시와 통제 사회이다. 감시와 통제 없이는 정보를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혁신은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유통만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술들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지적재산이 설정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에 점점 깊숙이 내장되고 있다. 외부의 감시는 곧 내면의 자기 검열로 바뀔 것이며, 지적재산권은 특수한 역사적 생성물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타의 재산권이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탈역사화 될 것이다.

▶ 토론 : 저자 - 창작과 소유의 괴리

앞서 서술했듯이 특수한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저자는 한편으로 지적재산권법의 강화를 통해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가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저자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현대철학에서 선언한 ‘저자의 죽음’이라는 테제이다. 1968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저자의 죽음’이라는 글을 통해 저자 개념에 사형선고를 내린다. 이후 저자의 죽음이라는 테제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나 자크 데리다⁶⁵⁾(Jacques Derrida) 등으로 이어지며 저자 개념을 무효화 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된다. 바르트는 “저자란 중세를 벗어나자마자 영국의 경험주의와 프랑스의 합리주의, 종교 개혁의 개인적인 신앙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명성을, 좀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인격’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생산된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며, “말하는 것은 언어이지 저자가 아니”라고 덧붙인다.(Barthes, 2002: 28-9) 그러나 푸코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저자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기능이 발휘되는 자리를 비어 있는 장소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글쓰는 주체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공간의 열림”을 경험할

65) 물론 바르트와 푸코, 데리다가 모두 같은 방식, 같은 목적으로 저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데리다는 때로 저자의 죽음을 선언한 바르트와 상반된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 되기도 한다. 니콜라스 로일(Nicholas Royl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선언[저자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데리다와 상반된다. 데리다는 항상 저자의 의도라든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한다. 적어도 이미 1976년부터 데리다는 바르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확실하게 그런 경우보다, 너무 지나치게 남발되는 저자의 죽음과 그 누락’을 지적한다. 아마도 데리다는 사실상 저자의 삶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Royle, 2007: 45) 그러나 데리다는 저자의 죽음이라는 테제에 완전히 반대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로일도 곧바로 다시 지적하듯이 데리다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물론 그가 사로잡혀 있는 죽음은 “삶에 대립하는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심장부에 놓인 어떤 것으로서” 죽음이다.(Royle, 2007: 46) 데리다가 사로잡힌 죽음은 중심과 기원의 죽음이다. 저자라는 중심이 의미의 유희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끊임없이 중심의 죽음을 열망한다. “무엇 때문에 중심을 애석해하는가? 중심은, 유희의 부재 차이 부재는, 죽음의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Derrida, 2007b: 467) 데리다는 바르트와 다른 지점(저자 안에서)에서 의미의 유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충실한 읽기를 통해 저자가 고정시킨(것이라고 믿어지는) 의미에 균열을 내며 의미의 유희를 즐기고 있다. 데리다의 말처럼 의미의 유희를 확장시키는 것은 중심(초월적 기의)의 부재이다.(Derrida, 2007a: 442)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은 “저자의 소멸로 인해 남겨진 빈 공간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고, 틈새와 균열을 눈으로 추적하는 일이며, 이 소멸로 인해 나타난 자리들과 자유로운 기능들을 감시하는 일”이다.(Foucault, 1991: 238)

저자의 기능이란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마치 신이 종교적 담론에서 구조의 보편성을 창조한 사람으로 간주되듯이 저자는 작품을 창조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저자는 작품에 선행하는 신이며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저자의 존재를 믿는 한 저자는 항상 그의 책의 과거로 간주되어 왔다. 책과 저자는 ‘전’(avant)과 ‘후’(après)로 배열된 채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저자는 책을 부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책 이전에 존재하고, 책을 위해 생각하고, 피로워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처럼 자신의 작품과 선행적인 관계를 가진다.(Barthes, 2002: 31)

저자는 작품의 보편성의 구조를 만드는 중심이 되었다. 의미가 자유롭게 해석되고, 유희하는 것을 봉쇄⁶⁶⁾하는 저자는 작품에서 ‘초월적 기의’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 혹은 초월적 기의는 의미의 구조를 성립시키지만 의미의 유희 그 자체를 낳지는 않는다. 데리다의 말처럼 “구조의 중심은 시스템의 일관성을 조직하고 거기에 방향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형식의 내부에 요소들의 유희를 가능케”하지만 “중심이 개시시키고 가능하게 만드는 유희를 종료” 시킨다.(Derrida, 2007a: 439-440) 중심은 의미의 유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희의 토대가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심은 의미의 유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는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구조를 가능케 하는 중심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초월적 기의로 ‘기능’할 뿐이다. “의미의 영역과 유희를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것은 “초월적 기의의 부재”이다⁶⁷⁾.(Derrida, 2007a: 442) 같은 의미에서 푸코도 저자는 “자기 텍스트의 소유자도, 책임자도” 아니라고 말한다.(Foucault, 1991: 238) 단지 저자는 담론과 관련하여 작품들의 ‘분류적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66) 바르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풍부한 작품의 의미를 축소시켜 다양한 해석을 차단하는 저자를 “거세적인 객관성”의 담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67) Allan Bass(1981, Routledge)의 영역본을 참조하여 번역을 일부 수정했다.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중심의 부재를 찬양하는 이러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것은 자본이 저자와 그의 자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중심이 되는 저자가 없다면 작품의 의미는 자유롭게 유희하며 산포될 것이다. 이는 상품화의 구조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저자를 통해 의미는 정박할 곳을 찾는다. “중심에 맞추어진 구조 개념은 사실상 기초를 이루는 부동성과 그 자체가 유희로부터 벗어난 안정적인 확신으로부터 형성된 근거 있는 유희의 개념이다. 이 확신에 기초하여 불안은 제어될 수 있다.”(Derrida, 2007a: 440) 저자의 존재는 의미를 정박시키면서 불안을 제어하고, 작품을 상품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본은 작품에 해독가능하면서 한정된 의미, 소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은 작품을 접하고 의미를 소진시킨 후에 다른 작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작품을 통해 발산될 수 있는 의미의 유희를 제거할 뿐 아니라, 작품(상품)의 생산자로서 그것의 판매를 통해 수렴되는 화폐의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저자는 창작자(미학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작품 판매를 통해 지불되는 화폐가 머무는 거처(소유권의 법적 주체)가 된다. 저자의 죽음이라는 현대철학의 테제는 미학적 주체로서 저자의 지위를 허물어 뜨렸지만 소유권의 법적 주체로서의 저자의 지위는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체제 하에서 저자는 초월론적 가상⁶⁸⁾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저자 개념이 하나의 환상임을 밝히는 것을 넘어 저자가 기반을 두고 있는 사적소유의 사회적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서 정보 소유자의 지위는 소유권의 법적 주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⁶⁹⁾.

68) 칸트는 단순한 가상과 초월론적 가상을 구별한다. 가라타니는 칸트의 구분에 따라 단순한 가상과 초월론적 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상이라고 해도 간단히 부정할 수 있는 환상과, 그렇게 할 수 없는 환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칸트가 단순한 가상과 쉽사리 제거할 수 없는 가상(초월론적 가상)을 구별한 사실을 중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날개를 갖겠다는 생각은 단순한 가상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 - 예컨대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한 나라는 생각 - 은 초월론적 가상이다. 초월론적 가상의 경우, 설령 가상이라고 생각해도 제거할 수는 없다.”(柄谷行人, 2006a: 49) 이를테면 초월론적 가상은 “현실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제거될 수 없는 환상이다. 민족, 화폐, 통합된 주체 등이 초월론적 가상의 예이다. 초월론적 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환상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존재 조건의 변혁이 필요하다.

69) 마크 포스터는 이러한 상황을 “자본주의의 언어적 전회”라고 말한다. “오늘날 언어 그 자체

자본은 화폐의 거처로서 저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나간다. 그래야만 그 거점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작품의 소유자인 저자의 위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때로 사적 계약을 통해 저자의 지위를 잠식하기도 하지만, 앞의 ‘정보 소유권자의 자본주의적 변형’에서 보았듯이 기업이 직접 작품의 저자가 되기도 한다.

4장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이 장에서는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2007년 봄 미국과 FTA⁷⁰⁾를 체결했다. 귀추가 주목되던 분야 중 하나였던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한미FTA는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여러 협정 중 하나일 뿐이지만,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이 맺은 다른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와 비교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살펴보는 작업은 미국

는 사적 재산의 영역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체계적인 지식은 생산에서 중심적인 것이 되고, 소비재는 점점 더 상징, 소리, 이미지의 형태를 취하며,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디지털화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소유관계는 언어 영역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정보가 자유롭게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논의되어 왔다. 이전에, 영혼으로서, 최고의 인간적 열망으로서 찬양 받던 것은 오늘날 판매를 위한 ‘지적 재산’이 되었다. 문화는 오늘날 디지털화된 지적 물품들의 영역에까지 재산법을 확장하려는 공격적 시도들 속에서 위기에 처한, 도전받는 영역이다. 자본주의는 언어적 전회를 맞이하고 있다.”(Poster, 2005: 63)

70)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등과 FTA를 체결한 이래 다섯 번째 FTA로서, 과거에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된다. 한미FTA는 2003년 정부의 “FTA추진 로드맵”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등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1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는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5년 세 차례의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2월 3일 공식적으로 한미FTA 추진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회의 공식협상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2일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다. 이후 미국 내부에서 행정부와 의회간 통상정책이 합의되었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협의를 개최된 후 2007년 6월 30일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하였다.

이 설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의 모습과 경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있고, 비준 이후 한미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직접적인 현안이라는 점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체제는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보에 대한 독점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감시·처벌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FTA 협정의 주된 명분은 국가 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자유경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의 실제 목적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를 강화하여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독점영역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부터 보게 될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논의들이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정보의 상품화 과정을 다뤘은 만큼 이 절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분야 중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미FTA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저작권 이외에 감시와 처벌 능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규정에 대한 강제 수단인 집행조항의 문제도 간단히 짚어볼 것이다.

4.1. 저작권 분야

4.1.1.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시적 저장은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인정된다⁷¹⁾. 한미FTA

71) 미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이나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체결 당시 일시적 저장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3세계 국가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미국은 각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찰시키고 있다.(김정우, 2006: 225)

협정문 제 18.4조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한미 FTA 협정문 제 18.4조 1항)

일시적 저장이란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계적 행위’이다. 일시적 저장은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 및 영상 서비스, DMB TV, 와이브로(Wibro)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완전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 ASP 방식, 터미널 방식 서비스)가 일반적인 사업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컴퓨터의 메모리에 홈페이지의 정보가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컴퓨터를 끄거나 다른 명령을 수행하면 저장된 내용은 지워진다. 다시 말해 일시적 저장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에게 극단적인 권리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한미FTA 협정 내용이 적용되면 이용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저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확대된 저작권법은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입법 활동의 한계상 불가능”하다.(남희섭, 2007a) 또한 위에서 인용한 협상문의 각주에는 “각 당사국은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발적 검열에 따른 이용자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조항

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창작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1.2.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취한 조치”를 말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협정문의 18.4조 7항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로 확대되었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회하는 인”은 “제18.10조 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미FTA 협정문 18.4조 7항) 이러한 규정은 한미FTA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형 조치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회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권리보호형 조치와 접근통제형 조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보호형 조치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FTA에서는 접근통제형 조치는 물론 접근통제형 조치에 대한 보호까지 새로 도입하여, 이를 우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회장치의 제조나 배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말 그대로 DRM과 같은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 해도 비상업적이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조치를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마저도 금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설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해도 실제로는 우회행위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장벽이 된다.(남희섭, 2007a: 555)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강화된 독점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2차 창작을 봉쇄하고 기존 저작물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쟁과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를 발생시킨다.(정보공유연대IPIleft, 2007a)

원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제할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통제하도록 해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은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쟁자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지 결코 소비자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이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남희섭, 2007a: 549) 이것은 저작권법의 독점력이 경쟁자를 넘어 이용자들을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4.1.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개인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50년, 법인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시켰다. 한미FTA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리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7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유럽연합이나 NAFTA 등에서 5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을 70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나 싱가포르처럼 최근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뿐이다.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무역체제를 무기로 정보의 독점 기간을 연장시키는 정책을 타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칠레와도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소니보노법과 일치시키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베른협약과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서 정한 보호기간보다도 20년이나 더 긴 것이다. ‘소니보노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은 보호 기간 만료를 앞둔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연장하려는 월트디즈니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제정된 법이어서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로렌스 레식에 따르면 “하원에서 애초에 이 법안을 지지한 13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 상원에서는 12명 중 8명이 디즈니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로부터 최상의 정치현금”을 받았다고 한다⁷²⁾.(Lessig, 2005:

2004년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키마우스가 한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59억 달러(약 6조 9백억 원)이다. 월트디즈니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이 만료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보호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적인 로열티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김정우, 2006: 222)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다양한 저작물의 독특한 가치침량기간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출판물은 수 년 이내에 절판되며 경제적 가치 역시 사라진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버전이 바뀌면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재산권을 한시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지식이나 정보가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정이용’과 함께 저작권의 상품화를 제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보·문화의 향유라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저작물 공유지(Public Domain)를 위축시켜 새로운 문화 창작 역시 제약”하는 것이 된다⁷³⁾.(정보

72) 소니보노저작권보호법이 통과되던 해인 1998년 선거때 미국 음반산업협회와 영화협회는 로비를 위해 1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돈은 20만 달러 이상이다. 디즈니는 이해에 의원들의 선거운동에 8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Lessig, 2005)

73) 정보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자료독점권에 대한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허의 권리 존속 기간은 특허를 출원한 때부터 계산해서 20년이다. 한미FTA 협상문의 제18.8조 6항 가호에서는 “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한다. 이 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최소한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이상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만큼 설정등록의 지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청의 심사에 걸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FTA를 통해 특허청의 심사가 오래 걸릴 경우 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칠레 FTA는 특허를 허여한다는 결정이 출원일로부터 5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걸릴 경우 특허 기간 연장을 해야 하고(제17.9조 제6항), 미국-싱가포르 FTA는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제16.7조 제7항), CAFTA는 출원일로부터 5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제15.9조 제7항), 미국-모로코 FTA는 출원일

4.1.4.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부속서한

한미FTA 협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부속서한이 있다.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

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제15.9조 제7항), 미국-호주 FTA는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제17.9조 제8(a)항), 미국-바레인 FTA는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이 걸린 경우에 특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정보공유연대IPleft, 2007a) 특허 심사기간이 장기화 될 때 그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전체적인 특허의 실질적 독점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2007년 4월에 발표한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심사 실무체계 개선을 통해 신속한 특허심사 종결을 유도”하고, “평균 심사 착수시기를 현재 기준인 9.8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16개월 이상 되는 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산포 관리”를 하며, “의견제출통지서 발생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중간서류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보호기간은 자료독점권을 통해서도 연장되고 있다. 자료독점권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적재산권중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주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나 임상시험 자료 등 주로 의약품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혹은 시험성적서와 같은 농약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말한다. 자료독점은 자료보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TRIPs와 같은 국제 조약에는 자료독점은 없고 자료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자료보호가 아닌 자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독점권은 협상문의 18.9조 1,2,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 중 3항에는 특허보호가 “명시된 보호기간의 만료보다 더 이른 날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당사국이 규정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와는 별도로 지식 독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독점권은 단지 “자료의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 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인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특허기간이 끝나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더라도 기존의 정보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다시 임상 실험을 해서 약효를 입증”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임상실험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게 된다.(김정우, 2006: 232-3)

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간 부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외국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한미FTA 협정문 18장의 부속서한 3)

이 부속서한에서는 무단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검색서비스 사이트 심지어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된다. 이 부속서한은 이 모든 사이트를 저작권법을 통해 폐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부속서한에서는 사이트 폐쇄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남희섭, 2007a: 555-8) 현행 저작권법 133조⁷⁴⁾에서는 문화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고·폐기 및

74) 2007년 6월 29일부로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의 133조에서는 문화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33조 1항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33조 4항 :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정문이 발효될 경우 부속서한을 통해 문화부장관은 무단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⁷⁵⁾.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침해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행정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권력자의 시선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거대 기업의 경우 각종 로비를 통해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위험도 있다. 때문에 행정권력에 의한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133조 6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부속서한을 바탕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 그것이 미치게 될 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능력이 규제완화라는 FTA의 명분과는 반대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2. 집행조항 분야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조항은 협정문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3조 6항 :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5) 이처럼 포괄적인 대상을 상대로 사이트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부속서한은 현행 저작권법의 규제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협상문 본문(제18.10조 제30항(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 제한)의 내용과도 충돌한다. 부속서한에서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협상문 제18.10조 제30항에서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30항 가호 8목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① 침해 자료(infringing material)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②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③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 그리고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정보공유연대IPleft, 2007a)

이 집행조항은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자 추정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신상정보 제공’ ‘법정손해배상제도’, ‘민사소송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일방구제절차 도입’,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 기준 도입’, ‘지재권 침해품 생성에 사용된 도구의 폐기’, ‘침해품 유통 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모든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⁷⁶⁾.

한미FTA 지적재산권의 집행조항은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민사절차에서의 원고와 형사절차에서의 고소인)에게 유리⁷⁷⁾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권리자에게 권리가 없거나 권리가 있어도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피해 여부에는 상관 없이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마저 있다. 협정문 상의 집행조항은 재판과정에서 지적재산권자에게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공하고 있다.(남희섭, 2007b) 집행조항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친고죄⁷⁸⁾ 확대 조항이다.

협상문 제18.10조 27항 바호에서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친고죄 조항은 저작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로렌스 레식의 논의를 따라 비친고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도록 하자. 그는 음악산업을 예로 들면 파일공유 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한

76)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은 정보공유연대IPleft(2007a)을 참조하라.

77) 협상문 제18.10조 17항에는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말은 권리자인 지적재산권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권리자 일방의 주장만 청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정조치는 우리 법에서 가처분과 가압류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침해사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피침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권리자의 의견으로만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다.

78) 비친고죄 조항이 우리나라 저작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06년의 저작권법 개정 때였다. 법 개정 당시에도 비친고죄 조항은 문제가 많았다. 비친고죄는 저작권자가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라는 정보의 특성을 역행하는 조항이다.(정보공유연대IPleft, 2005a·2005b)

다.

A유형 : 필요한 콘텐츠를 구매하는 대신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

B유형 : CD를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

C유형 :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됐거나 인터넷 밖에서 거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저작물을 구하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

D유형 : 저작권이 설정돼있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무상으로 배포하는 콘텐츠를 구하기 위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이용.(Lessig, 2005: 118-120)

레식은 이 4가지 유형 중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A유형만이 명백하게 피해를 초래”하고, “B유형은 불법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유익”하며, “C유형은 불법이지만 사회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레식에 따르면 4가지 유형 중 D유형만이 “명백하게 합법”이다. 하지만 비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D유형도 불법이 된다(조동원, 2007). 지적재산의 권리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법무법인 등에서 파일 공유를 규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창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보상을 통해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상품화 시키고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디지털 매체 환경을 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친고죄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일반이용자가 단속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비친고죄 조항이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07년 겨울에는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국민일보, 07년 11월 16일) 이는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법무법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2008년 4월의 한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웹하드 등에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블로그에 무심코 음악을 스크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

의 일부를 올리는 등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고 있으며, 소 취하 조건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한겨레신문, 08년 04월 09일)

이와 같은 사례들이 한미FTA가 발효되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호소해왔고, FTA가 발효된 이후 지적재산의 권리자로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4년부터 조직적 해적행위 단속전략(STOP: 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위 5개국에 중국(68%), 홍콩(6%), 인도(2%), 파키스탄(2%)과 함께 한국(2%)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미 지적재산권 수입국이기도 하다. 한미 서비스산업 무역수지를 보면 2003년에 3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인 15억 달러를 로알티와 라이선스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여행수지 적자는 14억 달러, 사업서비스 적자는 1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지적재산권을 통한 대미 적자는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를 통해 자국의 피해를 줄이고, 이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경제 논리상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체제를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화시키려고 한다. WIPO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를 이용해 무역압력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며 각국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화해 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져 간다. 2006년 조지 부시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이 약하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설계한 지적재산권 체제가 FTA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결코 정보와 같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이 아니다. 그것이 한시적 소유권이라는 사실은 지적재산권법이 공유와 사유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TA는 정보 소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유의 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는 정보 독점 영역을 확장하고 독점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정보의 직접 이용자로 확장했다. 권리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권리(접근권)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리이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국가가 보장하는 보호가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본주의란 사기업가들의 활동이 국가기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어디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Wallerstein, 1993: 59)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권리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타국의 인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타국의 인정을 통해 존중받는 국가의 권리를 주권이라 한다⁷⁹⁾. 주권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당성의 문제’이며, 국가간의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주권이란 하나의 가설적인 트레이드(trade)이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 잠재적으로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혹은 실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쌍방이 상대방 권력의 법적 실효성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정을 교환하는 것이다.(Wallerstein, 2005: 107)

요컨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재산권은 국가를 통해 보장되며, 국가는 타국의 인정을 통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의 세계체제였다. 이

79) 주권이 타국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은 가라타니에 의해서도 지적된바 있다. 가라타니는 월러스틴보다 한결음 더 나아가 국가가 공동체의 내부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동체의 호수원리가 약탈에 의해 성립되는 국가의 형성을 막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바깥에 국가가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 주변의 공동체가 방위하거나 지배로부터 독립하거나 하는 것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바깥 국가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자립성은 그야말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2007: 63-4)

세계체제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체제를 설계하고 타국에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미국이 설계한 지적재산권 체제는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과 기간을 확장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Ⅲ. 결 론

정보사회는 정보를 상품화하며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형성에 지적재산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기술의 혁신에 집착하고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만을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변동을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 반면에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보사회론자들의 오류를 극복한다. 그러나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이 이론적으로 준거하고 있는 역사 유물론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분석하는데 인식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자본이 안정적인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민족국가에 의한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자본의 불안요소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산성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정보는 공유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반자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자본주의 내에 포섭됨으로써 상품화 된다. 상품은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그 안에 사회와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가 상품이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한 변형일 뿐임을 논증하고 있다.

정보의 상품화를 추적하는 일은 정보의 소유권자가 발생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정보를 만든 사람이 정보를 소유해야 한다는 관념이 보편화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이러한 관념은 독점적 출판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출판업자들과 그것을 규제하길 원하는 세력들의 논쟁 속에서 발생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창조성·독창성 논쟁이 그것이다. 작가의 생산물이 완전히 창조적인 것이라면 창작자가 창조된 작품의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 생산된 정보가 창작자의 재산에 속한다는 관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토지의 비유이다. 이것을 통해 개인의 창조성은 생산수단이 되고, 저자는 생산력이 되며, 작품은 상품이 된다. 이렇게 개인은 작품의 창조자 이면서 창조된 작품의 소유권자가 된다.

정보가 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

화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개인창작자가 지식 생산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정보의 창작자인 개인이 아닌 기업(법인)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에서 기업으로 소유권자가 옮겨가는 과정을 정보소유권자의 자본주의적 변형이라고 불렀다.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변형과 연동하여 정보를 사유화 시키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적재산권은 처음부터 정보를 상품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지식이나 정보의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영국과 미국을 거치며 정보를 상품화 시키는 법적 담지자가 된다. 18세기의 영국과 20세기의 미국은 세계 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위치에 있었다. 헤게모니 국가는 세계경제에서 대자본에게 필요한 고이윤 부문을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선도산업이라는 형태로 장악한다. 즉, 헤게모니 국가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세계 체제 수준에서 관철된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국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연동하여 지적재산권 체제를 더욱더 자본주의적으로 변형 및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FTA협상은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정보에 대한 독점 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규제·감사·처벌 능력을 대폭 확장 시켰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통해 상품화 되고 있는 것이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정신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삶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보자본주의에서는 그 이전의 산업 구조 속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상품화 된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산업 혹은 의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의 일환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통한 정보의 상품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한 분야인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 논문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것은 저작물의 창작자이면서 소유자인 저자를 포괄적인 의

미에서 정보 소유권자로 지칭하는 것처럼 저작권의 특성을 지적재산권 일반의 특성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특허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는 점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상품화 과정이 특수한 지적 생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적 생산물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살펴보는 작업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위해 남겨진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은 정보의 상품화라는 측면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토지와 같은 일종의 생산수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을 지적재산권 체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재생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생산관계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본은 유통과정의 완성을 통해서 재생산된다. 즉, 자본은 생산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을 이룰 수 있다. 앞서 가라타니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유통과정은 ‘노동자=소비자’가 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그는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는 지점에서 노동자는 자본에 우위에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이 ‘일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은 있지만, 구입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가라타니는 현대사회의 소비가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되고 제한된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대중매체가 소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회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는 반자본의 흐름, 예를 들어 노동운동, 환경운동, 정보공유운동, 페미니즘운동 등이 정보사회의 형성과 전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역시 빠져 있다. 사회운동은 생산수단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자본의 흐름에 저항하는 반자본 운동이다. 사회운동은 지금 당장 체제를 전복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을지라도 사회 지배적 정체성에 끊임없이 문제제기 함으로써 대안적·저항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사회운동이 구성하는 대안과 저항은 지배적 정체성의 억압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다른 삶과 사회 체제를 상상하는 하나의 기획이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보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의 재생산과 현대사회의 소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 참고자료

1. 참고문헌

- 강남훈. 2000.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서 편. 한울
- 강상현. 1994.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학: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분류와 비교'. 『언론과 사회』 5호. 언론과 사회사
- 강은정·박실비아·박은자. 2007.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태경. 2006. '팍스의 역사유물론에 대한 역사과학적 비판과 재구성'. 『2006 중앙 우수논문 제8집』. 중앙대학교 대학원
- 구연상. 2004. 『매체 정보란 무엇인가』. 살림
- 김영식. 2000.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 김정우. 2006.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 문화, 기술, 지식을 독점하려는 미국 초민족자본의 패권주의 전략'.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 김해식. 1997. '정보사회의 자리매김'. 『정보사회의 이해』. 권태환·조형제 편. 미래 미디어
- 남희섭. 2006.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 그린비
- _____. 2007b.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 : 집행조항을 중심으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 도서출판 강
- _____. 2007a.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 :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 도서출판 강

- 박노형·권현호·이상혁. 2002. 『WIPO신조약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박상섭. 1987. 『자본주의 국가론: 현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전개』. 한울
- 방석호. 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승욱. 2007.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 _____. 2005. ‘역사적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세계체계분석으로 본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 백승욱 편저. 그린비
- 백옥인. 1997. ‘디지털 경제와 지적 소유권’. 『한국사회와 언론』 제9호
- 손동현. 1999. ‘정보의 존재론적 구조와 특성’. 『정보사회의 철학적 진단』. 철학연구회 편. 철학과 현실사
- 신경숙. 1997. ‘작가의 이름으로: 저작권의 낭만성과 역사성’.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제2호. 영미문학연구회
- 양희진. 2005.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 오병일. 2000.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 윤선희. 2007(9정판). 『지적재산권법』. 세종출판사
- 윤성식. 2000. ‘기술독점과 기술 확산: 특허의 정치경제학’.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 이진경. 2004. 『자본을 넘어선 자본』. 그린비
- 이현석. 1997. ‘저작권, 독창성, 문학’.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제2호. 영미문학연구회
- 장여경. 2007a. ‘인터넷 감시와 표현의 자유’, 문화권·문화적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2회 자료집
- _____. 2007b. ‘인터넷 감시사회의 길목에서’, <웹진 ACT!> 42호, <http://www.mediact.org>
- 정보공유연대IPleft. 2005a.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에 대한 쟁점조항별 의견 (2005/12/28)’. 『2003~2005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IPleft

- _____. 2005b.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 의견(2005/12/29)'. 『2003~2005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 _____. 2007a. '한미FTA 지재권 분야 평가서'. <http://www.ipleft.or.kr>
- _____. 2007b. '[논평]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http://www.ipleft.or.kr>
- 조동원. 2007.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웹진 ACT!> 45호. <http://www.mediact.org>
- 조정환. 2005. 『제국기계비판』. 갈무리
- 주은우. 1989.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방식에 관한 이론적 일 연구: 네오맑스주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경수. 2001. 『국제 지적재산권법』. 한울
- 카피레프트모임 편집부. 2000.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읽을 꺼리』 제 6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홍성욱. 2002. 『과눙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 홍성태. 1999.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0a. '지적재산권과 현실정보사회의 모순'.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 _____. 2000b.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서 편. 한울
- _____. 2003.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정보공유연대Ipleft
- 加藤雅信(Katou masanobu). 2005. 『소유권의 탄생』. 김상수 역. 법우사
- 甲斐道太郎(Ichi tarou). 1984. 『소유권 사상의 역사』. 강금실 역. 돌베개

- 柄谷行人(Karatani Koujin). 2006a. 『일본정신의 기원』. 송태욱 역. 이매진
 _____ . 2006b.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_____ . 2007.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 비
- Althusser, Louis. 2000.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
 장』. 김동수 역. 솔
- Anderson, Benedict. 2007.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
- Barthes, Roland. 2002.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동문선.
- Baudrillard, Jean. 2000.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무예출판사
- Bell, Daniel. 2006. 『탈산업사회의 도래』. 김원동 역. 아카넷
- Braithwaite, John-Drahos, Peter. 2002. *Information Feudalism: Who owns the
 knowledge economy?*. New Press
- Castells, Manuel. 2005.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역. 한울
- Darch, Colin·Halbert, Debra·Story, Alan. 2006.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 The Copy/South
 Research Group. <http://www.copysouth.org>
- Deleuze, Gilles.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http://users.california.com/~rathbone/deleuze.htm>
- Derrida, Jacques. 2005. '법에서 정의로'.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_____ . 2007a. '인문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게임'. 『글쓰기와 차
 이』. 남수인 역. 동문선
 _____ . 2007b. '생략'.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역. 동문선
- Dyer-Withefird, Nick. 2003. 『사이버-맑스』. 신승철·이현 역. 이후
- Dülmen, Richard Van. 2005. 『개인의 발견』. 최윤영 역. 현실문화연구
- Elias, Norbert. 2003. 『문명화 과정 II』. 박미애 역. 한길사
- Ekbal, B. 200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privilege, not a human
 right'. [http://infochangeindia.org/200801176812/Trade-Development/Intellectual
 Property-Rights/Intellectual-Property-Rights-are-a-privilege-not-a-human](http://infochangeindia.org/200801176812/Trade-Development/Intellectual-Property-Rights/Intellectual-Property-Rights-are-a-privilege-not-a-human)

-right.html

- Fisher, William. 2001. "The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New Essays in the Legal and Political Theory of Property*. Stephen Munzer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www.law.harvard.edu/faculty/ffisher/iptheory.html>
- Foucault, Michel. 1991. '저자란 무엇인가?'. 『미셸푸코의 문학비평』 장진영 역. 김현 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6.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 Frankel, Boris. 1997. 『탈산업사회의 이상과 현실』. 김용규 역. 일신사
- Garnham, Nicholas. 1990. 'Public Service versus the market'. in *Capitalism and Communication: Global culture and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age Publication
- Gates, Bill. 1997. 『미래로 가는 길』. 이규행 역. 삼성
- Giddens, Anthony. 1993.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역. 삼지원
- Gilder, George. 1991. 『마이크로코즘 - 경제와 기술에서의 양자혁명』. 한영환 역. 한국경제신문사
- Hardt, Michael·Negri, Antonio. 2007.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 Harvey, David. 2003.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역. 한울
- Held, David. 2001. '현대국가의 발전'. 『현대성과 현대문화』. Hall, Stuart 편. 전효관·김수진·박병영 역. 현실문화연구
- Henwood, Doug. 2004. 『신경제 이후』. 이강국 역. 필맥
- Kaczynski, Theodore John. 1996. '윌리엄·바버: 산업사회와 그 미래'. 『윌리엄·바버』. 조병준 역. 박영률출판사
- Lessig, Lawrence. 2005. 『자유문화』. 이주명 역. 필맥
- _____. 2002.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김정오 역. 나남
- Liang, Lawrence·Mazmdar Atrayee·Suresh Mayur. 2005. 'Copyright/Copyleft: Myths About Copyright'. <http://infochangeindia.org/200405096065/Trade-Development/Intellectual-Property-Rights/Copyright/copyleft-Myths-about-copyright.html>

- Marx, Karl. 1989.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 『경제학 노트』. 김호균 역. 이론과실천
- _____. 1997.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 _____. 2005a(제2개정판). 『자본론』 I -(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_____. 2005b(제2개정판). 『자본론』 I -(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Marx, Karl· Engels, Friedrich. 2002. 『독일 이데올로기』. 박재희 역. 청년사
- Negroponte, Nicholas. 2002.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Offe, Claus·Ronge, Volker. 1985. '국가개입의 구조적 성격'.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임영익·이성형 편역. 까치
- Patterson, Lyman Ray. 1968.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PFF. 1994.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 <http://www.pff.org/issues-pubs/futureinsights/fi1.2/magnacarta.html>
- Polanyi, Karl. 1991. 『거대한 변환』. 박현수 역. 민음사
- Poster, Mark. 1994. 『뉴미디어의 철학』. 김성기 역. 민음사
- _____. 1997. 『푸꼬, 마르크시즘, 역사: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이정우 역. 인간사랑
- _____. 1998. '사이버스페이스의 저작권'.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_____. 2005.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김승현·이종숙 역. 이제이북스
- Poulantzas, Nicos. 1985.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들'.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임영익·이성형 편역. 까치
- _____. 1986. 『정치권력과 계급권력』. 홍순권·조형제 역. 풀빛
- Reinbothe, Jorg·Lewinski, Silke von. 1997. 'The new WIPO treaties: A first Resume'. i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E.I.P.R.)* 4.

- Reinbothe, JorgLewinski, Silke von. 2002. *The WIPO Treaties 1996*.
Butterworths
- Renan, Ernest.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편역.
책세상
- Rose, Mark. 1994. *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 Havard
University Press
- Royle, Nicholas. 2007. 『자크 데리다의 유행들』. 오문석 역. 엘피
- Schiller, Dan. 1994.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 편집부 역. Vincent Mosco·Janet Wasco 편. 민글
_____. 2001. 『미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전략 디지털 자본주의 - 세계 시
장 체제의 네트워크화』. 추광영 역. 나무와숲
- Schiller, Herbert. 2004. 『정보 불평등』. 김동춘 역. 민음사
_____. 1995. 『문화(株):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양기석 역. 나남
- Sontag, Susan. 2004.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 Toffler, Alvin. 1994. 『제3의 물결』. 원창엽 역. 홍신문화사
_____. 1990. 『권력이동』. 이규행 역. 한국경제신문사
- Vaidhyanathan, Siva. 2003. *Copyrights and Copywrongs: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How it Threatens Creativ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93. ‘역사적 자본주의’.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
명』. 나종일·백영경 역. 창작과비평사
_____. 1999.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백
영경 역. 창작과비평사
_____. 2005.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이광근 역. 당대
- Wallerstein, Immanuel·Hopkins, Terence K. 1999. ‘세계체제: 위기는 있는가?’.
『이행의 시대 : 세계체제의 궤적, 1945~2025』. 백승욱·김영아 역. 창작과
비평사
- Weber, Max. 2002.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김진욱

역. 범우사

- Webster, Frank. 2007(개정판). 『정보사회이론』. 조동기 역. 나남
_____. 2001. ‘정보, 자본주의, 불확실성’.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홍성욱 역. 홍성욱·백옥인 편. 창작과비평사
- Žižek, Slavoj. 2002. 『환상의 돌림병』. 김종주 역. 인간사랑
_____. 2003.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 신문자료

- 전자신문. 2000/12/07. ‘한글과 컴퓨터를 위한 변명’: <http://www.etnews.co.kr>
- 국민일보. 2007/11/16. ‘고교생 자살 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 저작권 위반 통보’:
<http://www.kukinews.com>
- 한겨레신문. 2008/04/09. ‘걸면 걸리는 온라인 저작권’: <http://www.hani.co.kr>

3. 관련 조약 및 법률

-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 한미FTA 협정문 및 부속서한. 2007.5.25일자 공개본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IPO 저작권 조약 합의록(Agreed Statements concerning the WCT)

<국문초록>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우리 삶의 양식은 급속히 재구축되고 있다.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은 사회적 풍경의 극적인 변화가 사회구성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노동가치설에서 지식가치설로의 전환’, ‘재산보다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 계급의 세력화’, ‘완전 경쟁에 필수적인 정보의 완벽한 소통 가능성’ 등을 이야기 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생산·유통 되는 장밋빛 미래를 예견한다. 또한 그들은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징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내적 갈등과 모순이 평화롭게 초월되고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의 주장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그들은 정보부문의 중요한 변화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역사적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탈맥락화된 분석을 내놓게 된다.

반면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사회적·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분석함으로써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의 분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 그들은 정보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대신 정보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생산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정보가 자본주의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직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자본주의화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비판정보사회론자들의 분석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분석이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 역사유물론의 이론적 결함이 그들의 분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안정적인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불안요소들을 경제 외부에 있는 권력의 강제를 통해 자본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은 경제외적 강제의 핵심 수행자인 국가에 관한 인식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혁신이 야기한 사회 변동을 역사적 맥락 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유물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마르크스의 국가론과 포섭론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유물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을 시도하고, 나아가 그것에 준거해서 정보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산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본은 정보를 상품화함으로써 정보를 활용한 이윤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는 판매되거나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됨으로써 그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정보는 공유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생산의 전제였지, 생산의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정보의 이러한 속성은 정보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창출 체계를 동요시키는 계기가 되고, 정보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정보를 상품화 하고 상품화된 정보를 생산성의 원천으로 삼으며 발전한 사회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보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상품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가 상품화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한 변형일 뿐임을 논증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상품화하며 성립된 역사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성에 지적재산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은 정보의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을 스스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자본의 외부에서 자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내부로 포섭하여 자본의 이윤창출 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경제외적 층위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은 정보를 사유화·상품화 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이고, 국가는 정보를 상품화 시키는 지적재산권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세계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타국에 관철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헤게모니 국가는 세계경제에서 대자본에 필요한 고이윤 부문을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선도산업이라는 형태로 장악해왔다. 즉 헤게모니 국가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은 정보기술의 혁신과 연동하여 지적재산권 체제를 더욱더 자본주의적으로 변형 및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는 한미FT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할 정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정보에 대한 독점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규제·감사·처벌 능력을 대폭 확장 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독점적 정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자본에 귀속되고,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창조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어 : 정보사회, 정보자본주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정보의 상품화, 정보사회론, 비판정보사회론, 역사유물론, 국가, 포섭, 세계체제, 헤게모니, 한미FTA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formational Extension of Capitalism

: Mainly on Copyright

Heo, Min Ho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The mode of our lives is getting restructured rapidly due to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ain theorists of information society insist that the dramatic change of social landscape cause the radical change of social formation. Saying 'the conversion from the theory of labor value to the theory of knowledge value', 'having power of the professional class based on the knowledge not the property' and 'the possibility of perfect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essential to perfect competition', they expect the rosy future that information produces and circulates freely. They also assert that the inner complication and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e characteristic defining the modern society, be settled in a peaceful way 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s and a new kind of capitalism be emerged. The contention of main theorists of information society results from the obsession with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ocial changes with such innovation. They could not locate the important change of information section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separated it from the historical environment, so that they present the incoherent analysis.

Critical theorists of information society, on the other hand,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main theorists of information society through

analyzing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y face the appropriating process of the information that becomes the origin of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productivity in a capitalism way instead of picturing the optimistic future. According to them, informatization is same as the capitalization of information. The analysis of critical theorists of information society, however, has also a limit. For, their analysis is influenced directly from the theoretical defect of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on which that they rely. Marx could not explain the fact that the insecure elements of capital should make capital by the compulsion of power out of economy to reproduce the production conditions because capital does not have the stable basis of self-reproduction. Also, his theory has the epistemological flaw about the state, the essential performer of compulsion out of economy. The theoretical complement to the historical materialism, therefore, needs first to analyze the social change caused by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This thesis seeks to complement the historical materialism theoretically looking through the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heory of subsumption and performs the material analysis of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such complement.

The information society is the society in which information appears as an essential element of productivity. The capital, thus, has to structure the system of making profit using information while making it commodities. The information, however, acquires its own value not by selling or possessing it but by being shared with. Being more shared, the information enhances its own value. The information, therefore, has an attribute of essentially resisting against th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itself. The information is the presupposition of production not the direct element of production. This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leads to stir the system of making profit of capital and makes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information capitalism unrest. The 'information society' develops reversing this circumstance and making commercialized information a origin of productivity. As a result, the commercializing process of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to study information society of these days. This study proves that information society is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ism trac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of information

historically.

The information society is one form of historical capitalism established making information commod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it. The capital does not have an inner power to stabilize the fear caused by the attribute of information for itself. The compelling power out of economy as a state is needed to include the element that makes capital unrest out of capital, keep the system of making profit and constitute a stable reprodu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n essential device of making information private and commercial and the state keeps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make information commercial consistently. It should be carefully seen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esigned by the state holding hegemony in the world system and accomplished in other countries. The state holding hegemony monopolizes the high-profit section needed to the large capital in the world economy and holds that section as a form of leading industry. That is, the state holding hegemony plays a role to guarantee and spread the profit of capital. Especially late in the 20th century, the state holding hegemony or U.S. changes and enhances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more capitalism way linked with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ing strengthened by U.S. expands the field of information made to informatize and extends the period of monopolizing information as we see the examples of U.S. -Korea FTA. U.S. extends largely the ability of regulating, watching and punishing to guarantee it. It is important that the human creative ability reverts to the capital as the monopolized information field enlarges; and the cultural life sharing creative productions is being destructed as the period of monopolizing prolongs.

Keyword : Information Society, Infor-capitalism, Intellectual Property Righty, Copyright, Commodification of Information,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Critical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Historical Materialism, State, Subsumption, World-systems, Hegemony, Korea-U.S. FTA